

긴급 토론회

램지어 교수 '사태'를 통해 본 아카데미 역사부정론

2021년 3월 12일 (금) 14:00~18:00 온라인

공동주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재)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일본군'위안부'역사관(나눔의집)

개회사 14:00-14:10
사회: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양현아 (일본군'위안부'연구회·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월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나눔의집 학예실장)

참가신청



역사적 '오류'는 어떻게 '부정론'이 되는가 14:10-15:30
사회: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중앙대)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공창제와 일본군 '위안부' 제의 차이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자들은 왜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집착하는가?
강정숙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 해석의 의도성과 자료 이용의 오류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 세계질서와 역사수정주의(부정론)의 정치

식민지 공창제, 여성혐오와 인종차별 15:40-17:00
사회: 양현아 (서울대)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정쟁을 넘어 토론으로. 식민지 공창제와 인신매매
조경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 | 역사부정과 소수자 혐오
토드 헨리 (UC샌디에고(UCSD) 역사학 교수) | 역사의 오용: 존 마크 램지어의
"태평양전쟁 당시 성 계약" 속 학문적 부정
김부자 (도쿄외국어대 교수) | 일본 /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

종합 질의응답 17:10-18:00
사회: 강성현 (성공회대)

문의: 정의연 info@womenandwar.net

[간급 토론회]

램지어 교수 '사태'를 통해 본 아카데미 역사부정론

일시	2021년 3월 12일(금) 오후 2시 ~ 6시
형식	zoom webinar
공동주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역사관(나눔의집)

목차	
프로그램	4
역사적 ‘오류’는 어떻게 ‘부정론’이 되는가.....	5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_____	5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_____	13
강정숙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_____	21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_____	27
식민지 공창제, 여성혐오와 인종차별	33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_____	33
조경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HK 교수 _____	46
토드 헨리 UC 샌디에고(UCSD) 역사학 교수 _____	52
Todd A. Henry Department of History, UCSD _____	58
김부자 도쿄외국어대학교 교수 _____	65
金富子 東京外国語大学 _____	71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10	<p>개회사</p> <p>이나영(정의기억연대·중앙대) 양현아(일본군'위안부'연구회·서울대) 김대월(일본군'위안부' 역사관(나눔의집))</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강경란(정의기억연대)</p>
14:10~15:30	<p>1부. 역사적 '오류'는 어떻게 '부정론'이 되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이나영(정의기억연대·중앙대)</p> <p>발표 1. 호사카 유지(세종대) “공창제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차이”</p> <p>발표 2. 김창록(경북대)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자들은 왜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집착하는가?”</p> <p>발표 3. 강정숙(이화여대) “해석의 의도성과 자료 이용의 오류”</p> <p>발표 4.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세계질서와 역사수정주의(부정론)의 정치”</p>
15:30~15:40	휴식
15:40~17:00	<p>2부. 식민지 공창제, 여성혐오와 인종차별</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양현아(서울대)</p> <p>발표 1.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정쟁을 넘어 토론으로. 식민지 공창제와 인신매매”</p> <p>발표 2. 조경희(성공회대) “역사부정과 소수자 혐오”</p> <p>발표 3. 토드 헨리(UC샌디에고(UCSD) 교수) “역사의 오용: 존 마크 램지어의 태평양전쟁 당시 성 계약 속 학문적 부정”</p> <p>발표 4. 김부자(도쿄외국어대 교수) “일본/식민지 조선의 공창제”</p>
17:00~17:10	휴식
17:10~18:00	<p>종합 토론 (질의 및 답변)</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강성현(성공회대)</p>

공창제와 일본군'위안부'제의 차이

호사카 유지 |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1. 일본군이 업자들을 고용해 여성들을 유괴했다

* 램지어 교수는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응용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설명한다는 오류를 범했다. 그는 모집업자와 여성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성매매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자들이 여성들을 유괴하려고 했다는 공문서가 아래와 같이 남아 있다.

“(전략) 교섭방법을 잘 모르는 부녀자에 대해 돈을 벌 수 있다, 군대만을 위문하여 식사는 군이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에 유괴의 혐의가 있으므로 피의자를 동행해 조사했다.”¹

2.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업자들을 선정했다

일본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상하이의 일본군이 여성들을 작부(=술 접대부)로 동원하라고 지시를 내려 업자들을 일본과 조선에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²

그런데 일본정부나 일본군이 모집업자들을 극비리에 선정했다. 공문서에 다 나와 있다.³ 1938년 이후, 일본정부와 경찰은 일본군의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는 업자들을 단속했지만 일본군의 증명서를 갖고 있는 업자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했다. 즉 모집업자의 배후에는 일본정부

¹ 1938.2.7. <시국이용, 부녀자유괴피의 사건에 관한 건>, 국립공무서관 보관 문서

² 위의 문서

³ 『중군위안부 관계자료집성』(1997) 제 1 권, pp. 87-94.

와 일본군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일본군에게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책임이 있다.

1937년까지의 해외 매춘업소와 1938년 이후의 일본군위안소는 별개의 존재이다. 그런데 램지어 교수는 1937년까지의 일본이나 조선에서의 매춘업이 그대로 일본군과 관계없이 해외 매춘업소로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했다.

3. ‘내무성 통첩’에 대해

램지어 교수는 1938년 2월의 공문서 ‘내무성 통첩’을 근거로 위안부를 시키기 위해 해외로 보내는 여성들은 원래 일본에서 추업(醜業)을 하는 여성이었고 여성들은 경찰서에 출두해야 해외도항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 매춘부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은 매춘계약이 아니라 작부계약이었다. 이 부분은 후술한다.

그런데 ‘내무성 통첩’에 실린 일본정부의 방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외무성 공문서가 있다.

“현지 헌병대가 군속, 군고용인이 아닌 자, 주로 특수부녀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것으로 중국으로 도항하게 한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소정대로 영사관(의 경찰서) 발급의 증명서로 하도록 배려해 달라.”⁴

위 공문서는 여성들이 경찰(영사관)의 증명서가 아니라 현지 일본군 헌병대의 증명서가 있으면 중국으로 도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결국 업자들은 여성들을 ‘육군식당의 여급이 된다’ 등의 말로 속여서 얼마든지 군위안소로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아래의 증언은 일본군 헌병이었던 일본인이 여성 유괴의 사례를 패전 후 책으로 낸 내용이다.

중국 남부의 난닝(南寧)에서 헌병대의 소장(曹長)으로 근무한 스즈키 타쿠시로(鈴木卓四郎)가 『헌병 하사관(憲兵下士官)』(1974, pp. 91)에 쓴 내용이다.

⁴ “중국도항 방인 잠정처리의 건”, 1940, 『중군위안부 관계자료집성』, 1997, 제 1 권 p. 142.

940년 여름 난징 점령 직후 나는 '육군 위안소 북강향(北江鄉)'이라는 간판을 내건, 민가를 개조한 초라한 위안소를 매일 순찰했다. 군이 위안소를 개설했으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여단사령부의 지시 때문이었다. 15 명정도의 15 살부터 23 살인 젊은 조선인 작부를 거느린 경영자 황씨는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을 생각하게 하는 청년이다. 그런데 그는 지주의 둘째 아들이며 소작인의 딸들을 데리고 도항해 왔다는 얘기가.

계약은 육군 직할의 다방, 식당이라는 얘기였지만 오빠라고 그를 따르는 젊은 여자들에게 매춘을 강요해야 하는 책임을 깊이 느끼는 듯했다.

위 증언을 보면 위안소는 일본군이 개설한 군위안소였고 황씨와 여성들은 계약 사기로 유괴된 것이다. 그리고 군의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하는 헌병인 저자는 그 상황을 방치했다. 바로 군이 설치한 위안소였기 때문이다. 이런 구 일본병사가 조선인 위안부를 묘사한 사례는 많고 모두 여성들이 유괴되었다고 적었다. 램지어교수는 이런 역사적 증언을 무시했다.

위안부가 된 여성들이 원래 매춘부였던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많다. 1944년 10월 작성된 연합군의 포로심문보고서 제49호는 생포된 조선인 위안부 20명을 조사한 문서인데 위안부 20명 중 원래 매춘 경험이 있는 여성은 소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속아서 버마까지 연행되었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http://www.exordio.com/1939-1945/codex/Documentos/report-49-USA-orig.html>)

4. 여성들이 모두 성매매계약을 맺었다는 램지어교수의 허위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매매계약서'는 일본 내나 조선 내에는 존재했는지 몰라도 해외로 보내는 여성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이 1925년 '취업을 시키기 위한 부녀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매춘을 시키기 위해,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여성이라고 해도 해외로 보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국제조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일본정부는 1929년 우선 중국 상하이에서 '공창제'를 폐지했다.⁵ 당시 상하이는 일본의 조계지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일본인 '공창'들도 다수 거주했다.

⁵ 『중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集成)』 제 1 권, pp. 447~450.

그렇지만 국제조약도 맺었고 상하이 당국이 공창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당국도 상하이에서 ‘공창’을 없앴다. 그러므로 상하이가 시작이 되어 해외에서 일본은 공창제를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일본이라는 국가는 해외에서 공인된 매춘부를 불허로 했다.

그런데 일본당국은 편법(便法)으로 ‘공창제’ 대신 ‘요리점 작부제’를 도입했다.⁶ 작부란 술을 달아주면서 손님을 접대하는 여성이고 매춘부가 아니다.

일본 경찰은 통계로 창기, 예기, 작부를 명백히 구별했다.⁷ 원래 작부는 손님과 성관계를 갖는 존재가 아니다. 작부들 중에는 손님이 요구하면 성관계를 갖는 사람도 있었지만 작부들은 자신들이 매춘부가 아니라고 자작하고 있었다.⁸ 일본당국은 해외에서 ‘공창제’ 대신 ‘요리점 작부제’를 도입했고 그것이 일본군 ‘위안부제’로 연결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작부는 매춘부가 아니지만 일본군은 작부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모집해 결국 매춘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그런 여성들이 ‘공창’ 대신 ‘위안부’로 불리게 되었다.

상하이 일본당국이 ‘공창제’를 폐지한 후 일본경찰청은 중국에 진출한 여성들의 통계를 냈는데 매춘부를 뜻하는 ‘창기’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1938년부터 1943년의 일본 경찰청 통계를 보면 중국에 진출한 여성들은 예기, 작부, 여급, 메이드, 댄서 등으로 분류되어 기재되었지만 창기는 없다.⁹

그런데 이렇게 예기, 작부, 여급, 메이드, 댄서 등으로 계약한 여성들이 현지 일본군에 가서 매춘을 강요당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정체였다. 여성들은 계약서와 다르게 병사들과의 성관계를 강요당했다. 바로 계약 사기였다. 계약 중에는 도쿄의 공장노동자로 1년간 다녀온다는 사기계약도 있었다. 조선의 학교 선생님이 도쿄로 가서 1년간 공장에서 일한다는 말에 속아 버마에 연행되어 매춘을 강요당한 사례가 보고되었다.¹⁰ 속아서 ‘위안부’가 되기를 강요당한 여성들의 사례는 그녀들을 만난 일본인 병사들에 의해 패전 후에 책으로 많이 출판되었다.¹¹

1937년 12월 군위안소의 본격적인 개설을 결정한 일본군은 업자들을 시켜 여성들을 ‘작부’라는 이름으로 모집하게 했다. 작부가 결국은 무조건 병사들과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⁶ 『중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集成)』 제 1 권, pp. 447~450.

⁷ Hata Ikuhiko, 『위안부와 전장의 성』, 1999, p. 84.

⁸ 위의 책, p. 84.

⁹ 위의 책, p. 87.

¹⁰ Omata Ikuo, 『전장과 기자』, 1967, pp. 333~334.

¹¹ Hosaka Yuji, 『문서 증언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2019, pp. 189~209.

모르는 여성들은 업자들이 준비한 작부계약서에 서명했다. 이것이 램지어교수가 말하는 ‘성매매계약’이지만 여성들은 작부계약을 성매매계약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작부는 원래 매춘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1938년 1월에 군마현에서 체포된 업자가 갖고 있던 작부계약서 양식은 모두 4장이고 그 중 1장은 각 방면에 대한 협조 요청서였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2년’, ‘벌어들인 돈의 10%가 소득’, ‘육군위안소에서 작부과업을 할 것’, ‘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낼 것’ 등이 적혀 있다. 램지어교수가 말한 계약서란 양식으로 이것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업자들은, 계약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고 글자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여성들을 속이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해방 후 10년이 지난 1955년의 통계에서도 여성 문맹률이 32.1%였고 세계적 평균으로는 1930년대의 문맹률은 약 67%였다.¹² 그것을 생각할 때 한국인(조선인) 여성의 문맹률은 1930년대 아마도 70%를 웃돌았을 것이므로 조선인 여성들은 만약에 계약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장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계약서 양식 중 하나인 승낙서 양식에 ‘작부과업(창기와 같음)’이라고 살짝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창기’가 ‘매춘부’를 뜻한다는 것을 현재도 잘 모른다. 업자들은 그런 여성들의 무지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만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문제를 미연에 막으려고 그런 문구를 살짝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본 경찰은 당초 업자들을 교섭방법(계약관계)에 무지한 여성을 속여서 유괴할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¹³

그러므로 현지에 와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여성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그런 여성들의 호소를 묵살하여 무리하게 ‘위안부’로 만들었다.¹⁴

위안소란 병사를 위로하는 장소라고만 듣고 갔더니 매춘업소라고 알고 저항한 여성의 이야기들의 증언이 많다. 그러나 일본군의 군의관이나 헌병들은 여성이 속아서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위안소의 상황은 램지어교수가 말한 ‘업자와 여성들의 신뢰 하에 이루어진 성매매계약’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다.

¹² <https://ourworldindata.org/global-education#literacy>

¹³ <시국이용 부녀 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 1938 2. 7. 국립공문서관 보관, 레퍼런스 코드=A05032044800.

¹⁴ Kenichi Nagasawa, 『한커우 위안소(漢口慰安所)』, 1983, pp. 146~149.

5. 매춘부(창기)계약과 작부계약을 혼동한 램지어교수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치명적인 잘못은 매춘부(창기)계약과 작부계약을 같은 성매매계약으로 단정한 점이다. 왜냐하면 창기는 매춘부이지만 작부는 매춘부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25년 5월 4일 후쿠오카현 지사가 내무성 경찰국장 앞으로 보낸 문서에는 코노 하츠(Kono Hatsu)라는 여성이 창기등록을 한다고 약속을 해 가불금을 받았는데 창기등록을 하지 않았고 작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건이 보고되었다.¹⁵ 이 문서 속에서 창기와 작부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

다른 사례를 예로 들으면, <영리 직업 소개사업 단속규칙 제23조>에는 여성들을 주선하는 사업에 관한 규칙이 적혀 있는데, 그 규칙은 예기와 작부 등에 적용되는 규칙이고 창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그 이유로 “창기과업은 종래 독립적 과업으로 취급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도 창기와 작부를 다른 직업으로 분류했다.¹⁶

즉 일본의 법률로는 창기(매춘부=공창)와 작부는 다른 존재였는데 램지어교수는 양자를 동일한 매춘부라고 간주하는 오류를 범했다.

1926년 5월 1일 작성된 <공창의 개황>¹⁷을 봐도 이 문서에서 공창(=매춘부)으로 설명되고 있는 존재는 창기뿐이다. 이 문서 속에서 작부는 공창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1931년 2월 작성된 <공창과 사창>¹⁸에서도 공창이란 창기를 뜻한다고 나와 있다. 작부에 대해서는 “예기, 작부, 접객여성, 카페·바·레스토랑 등의 여급, 백화점이나 건물 안에서 일하는 판매원 중에도 사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조사하기 어렵다”고 언급되어 있다.¹⁹ 즉 작부는 자유의사로 손님과 연애를 할 수 있지만 매춘부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일본에 있어 공창이란 창기를 뜻하고 창기가 매춘부이지만 예기, 작부, 접객여성, 여급 등은 매춘부가 아니었다. 여성들이 공창이 될 경우 창기과업계약을 맺었다. 창기과업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¹⁵ <창기등록에 관한 건>(1925.5.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레퍼런스-코드 A05032277300.

¹⁶ <영리직업 소개사업 단속규칙 혐의의 건>(1925.12.11.),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레퍼런스-코드 A05032288000.

¹⁷ <공창의 개황>(1925.5.1, 내무성문서,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레퍼런스-코드 A05020102900.

¹⁸ <공창과 사창>(1931.2, 내무성문서,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레퍼런스-코드 A05020127200.

¹⁹ 위와 같은 문서 p. 316.

“첫째, (인명)은 창기단속규칙(내무성령 제44호) 제3조에 의해 관할 경찰서에서 창기명부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 창기과업을 하는 것으로 한다.”²⁰

즉 매춘부인 창기는 창기과업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현재 양식으로만 남아 있는 위안부계약서는 창기계약서가 아니라 작부계약서다. 처음부터 일본군과 그들이 선정한 업자들은 여성들을 매춘부가 아니라 작부로 계약한 것이 계약서 양식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조선인 여성에 대해서는 이런 계약서 양식조차 남아 있지 않다.

작부는 접객대금이나 주류 판매 실적으로 자신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²¹ 작부는 그런 수익으로 가불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작부계약이라고 해도 가불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일본군은 작부로 계약한 여성을 군위안소에서 일하게 했을 때 군위안소 내에서 음식물, 주류 등의 판매, 위안소 내에서의 음주를 다음과 같이 금지했다.

“위안소 내는 항상 깨끗하게 하여 음식물, 술, 안주 등의 판매를 금지한다.”²²

“위안소에서는 음주를 금한다.”²³

일본군은 작부 등으로 여성들과 계약했는데 군위안소에서 여성들에게 작부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본군과 업자들은 여성들과의 계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결국 일본군이 선정한 업자들은 ‘예기, 작부, 접객여성, 군의 식당·레스토랑의 여급, 해군병원의 간호사 보조 등’으로 여성들과 계약을 맺었지만 현지 군부대에 가서 일본군은 여성들에게 오로지 매춘만을 강요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범죄행위였고 일본군과 업자들은 여성들을 속여서 유괴한 범죄 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들은 속았다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가불금을 받았고 군인들의 감시 하에 있는 전쟁터에서 도주하려고 해도 도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저 성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본군 ‘위안부’의 비참한 실태였다.

²⁰ 위와 같은 문서, p. 106.

²¹ 위와 같은 문서, p. 321.

²² 모리카와 부대 특수위안업무에 관한 규정(1939.12.14.)(『중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 2, p. 330.

²³ <군인클럽규정>(1942.8.16)(『중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 3, p. 150.

6. 결론

이 짧은 글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모두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주된 부분인 성매매계약에 대해 적었을 뿐이다.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문제에 적용한 게임이론의 문제점,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업자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업자들의 배후에 항상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존재했다는 점, 여성들이 맺은 계약은 창기(=매춘부)계약이 아니었는데도 현지에서 매춘을 강요당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점을 짧게 논평해 왔다. 보다 상세하게는 출처 <신친일파>(2020, 한국어판), <문서 증언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2019, 일본어판),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 자료집1>(2018, 한국어판) 등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역사적 ‘오류’는 어떻게 ‘부정론’이 되는가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자들은 왜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집착하는가?

- ‘Ramseyer 사태’를 실마리로 -

김창록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Ramseyer 사태’, 학문적 평가는 끝났다.

- 2020년 12월 1일부터 학술지 『국제 법경제학 평론(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나, 2021년 2월 10일에 위 학술지의 「우려 표명」²⁴(Expression of Concern)에 의해 대체되었다가, 3월 5일에 또 다른 「우려 표명」이 발표된 후²⁵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된, J. Mark Ramseyer 하버드대 미쯔비시 일본법 교수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Harvard University)의 「태평양 전쟁 시기의 성 계약」²⁶에 대한 글로벌 학문공동체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²⁷
- Ramseyer의 글이 ‘매춘(성매매)²⁸업자와 여성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그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료와 2차 문헌의 동원방식이 매우 자의적이고 왜곡되어 있어서 학술논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은, 오스트레일리

²⁴ “Expression of Concern”, 2021.2.10.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4481882100090>). 이글에서 인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2021년 3월 10일에 검색한 결과이다.

²⁵ “Expression of Concern”, 2021.3.5. (<https://www.journals.elsevier.com/international-review-of-law-and-economics/announcements/expression-of-concern>).

²⁶ J. Mark Ramseyer,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65, 2021 (<https://reader.elsevier.com/reader/sd/pii/S0144818820301848?token=4288A42270DC1ACD70C0C347F7FBF7CC54272C3CD75D16788DF09F5FFA034A07A341024392486FD5CFFF960973FDD27F>).

²⁷ 아래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편지, 성명 등을 참조. 정의기억연대, “역사부정론 반박” (<https://womenandwar.net/kr/%ec%97%ad%ec%82%ac%eb%b6%80%ec%a0%95%eb%a1%a0-%eb%b0%98%eb%b0%95%ec%9d%84-%ec%9c%84%ed%95%9c-%ec%9e%90%eb%a3%8c-%eb%aa%a8%ec%9d%8c/>); “Resources on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 th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http://chwe.net/irle/>).

²⁸ 원문에서 prostitution은 당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매춘’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의 법적 용어인 ‘성매매’와 병기한다. 같은 이유에서 ‘매춘부’(prostitute)는 ‘성매매여성’, ‘매춘업소’(brothel)은 ‘성매매업소’와 병기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나영 교수로부터 조언을 얻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아의 Tessa Morris-Suzuki의 「'위안부' 문제,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학문적 충실성: 연구 보조 자료」²⁹와 Amy Stanley를 비롯한 미국·영국·싱가폴·일본의 대학에 재직 중인 5명의 학자들이 공동집필한 「'태평양 전쟁 시기의 성 계약': 학문적 부정을 이유로 철회되어야 할 사례」³⁰의 탁월한 분석을 참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amseyer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게임이론은 학술적으로 볼 때 잘못 동원된 것이라는 사실도 경제학자들이 주도하여 3,3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서명한 공개편지³¹에서 명확하게 지적되어 있다. 그런 글이 '하버드대학 교수'의 '논문'으로 '국제학술지'에 실렸다는 사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자라면 누구에게나 매우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 Ramseyer가 학자로 남으려면, <국제 법경제학 평론>이 학술지로 남으려면, 지금이라도 해당 글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II. 'Ramseyer 사태'의 맥락 : 2019년의 비약

-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Ramseyer의 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등장하게 된 특별한 맥락이다.
- 이와 관련하여 Ramseyer의 글에서 돌출적으로 등장하는 두 부분이 주목된다.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동원(recruitment)에 관한 기술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단락, 즉 “정부가 - 조선 정부든 일본 정부든 - 여성들에게 매춘(성매매)을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군이 사기꾼 모집업자와 협력한 것이 아니었다. 모집업자가 군 위안소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수십년간 젊은 여성들을 속여 매춘업소(brothel: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만든 조선인 모집업자였다”³² 라는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초록에 등장하는 “위안소'라고 불린 전시

²⁹ Tessa Morris-Suzuki, “The ‘Comfort Women’ Issue, Freedom of Speech, and Academic Integrity: A Study Aid”, *The Asia-Pacific Journal / Japan Focus* Volume 19 | Issue 5 | Number 12, 2021 (<https://apjif.org/-Tessa-Morris-Suzuki/5542/article.pdf>).

³⁰ Amy Stanley, Hannah Shepherd, Sayaka Chatani, David Ambaras and Chelsea Szendi Schieder,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The Case for Retraction on Grounds of Academic Misconduct”, *The Asia-Pacific Journal / Japan Focus* Volume 19 | Issue 5 | Number 12, 2021 (<https://apjif.org/2021/5/ConcernedScholars.html>).

³¹ “Letter by Concerned Economists Regarding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 th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http://chwe.net/irle/letter/>).

³² J. Mark Ramseyer, op.cit., p.5.

- 매춘업소(성매매업소)을 둘러싼 남한과 일본 사이의 오래된 정치적 논쟁³³이라는 부분이다.
- 전자는 특별한 논증이 없으니 돌출적이다. 후자는 글의 본문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내용임에도 초록에 담겨 있으니 돌출적이다. 이들 부분이 왜 등장했는지는 글 자체에 의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 그 설명은 Ramseyer의 2019년 글(discussion paper), 「위안부와 교수들」³⁴에 담겨 있다. 이 글은 “강제연행”(forcible military recruitment)에 초점을 맞추어 “성노예 담론”(sex slave narrative)을 비난한 것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염두에 두면서 쓰여진 것이다. 2021년 글의 본문의 2(Prostitution in Prewar Japan and Korea)와 3(The comfort stations)은 2019년 글의 II(Prostitution in Prewar Japan and Korea)와 소제목 및 내용의 면에서 거의 겹친다. 2021년 글은 2019년 글의 일부를 발췌·수정하여 작성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2021년 글에서는 더욱 부자연스러워진 위의 두 가지 돌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문제의 2019년 글은 Ramseyer의 1991년 논문, 「제국 일본의 계약매춘(계약성매매): 상업적 성산업에서의 크레더블 커미트먼트」³⁵와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자들의 주장들을 엮어 놓은 것이다. 1991년 논문에서 Ramseyer는 일본 정부 등의 자료를 동원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매춘(성매매)”(prostitution in pre-World War II in Japan)에서 매춘부(성매매여성)와 업자 사이의 관계는 상호 계산된 계약관계였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그 논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주목되는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Ramseyer가 학문적 자제를 어느 정도 유지했다는 점이다. Ramseyer는 그 글의 머리말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논문의 수비범위를 한정했다. 즉, 그는 “논문이 산업구조의 역사에 대한 연구일 뿐 규범적인 에세이가 아니”라는 점, “자료의 부족 때문에, 일본 여성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자발적으로 매춘부(성매매여성)가 되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가족의 압력을 받아 그렇게 되었는지라는 기본적인 경험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며”, “설명

³³ *ibid.*, p.1.

³⁴ J. Mark Ramseyer, “Comfort Women and Professors”, 2019 (http://www.law.harvard.edu/programs/olin_center/papers/pdf/Ramseyer_995.pdf).

³⁵ J. Mark Ramseyer, “Indentured Prostitution in Imperial Japan: Credible Commitments in the Commercial Sex Industry”,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Vol. 7, No. 1, Spring, 1991 (http://lps3.www.jstor.org.libproxy.knu.ac.kr/stable/pdf/764879.pdf?ab_segments=0%2Fbasic_search_gsv%2Fcontrol&refreqid=fastly-default%3A418d48a330fd7da88a5141cdeb422558).

의 편의를 위해 -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만 - 관련된 여성들이 일관되게 스스로 고용합의를 선택한 것처럼 묘사한다”라는 점 등을 밝혔다.³⁶

- 그런데 Ramseyer의 1991년 글의 기본 논지는 2019년 글과 2021년 글에서, 추가적인 논증 없이, 전쟁 전만이 아니라 전쟁 중으로, 일본만이 아니라 식민지조선으로, 매춘부(성매매여성)만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로 한없이 확대 적용된다. 게다가 2019년 글과 2021년 글에서는 최소한의 학문적 자제도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거 없는 혹은 부적절하거나 왜곡된 근거를 내세운 과도하게 단언적인 ‘주장’들이 전개되어 있다.
- 20년을 사이에 둔 Ramseyer의 이 ‘비학문적인’ 비약은 왜 등장하게 된 것일까? 일본 정부나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련 증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Ramseyer가 1998년 가을에 하버드대학에 미쯔비시 일본법 교수로 임명되었다는 팩트,³⁷ 그리고 그가 2018년에 일본 정부로부터 육일중수장(旭日中綬章)을 받았고, 그 사실이 라이샤워 일본연구소(Reischauer Institute of Japan Studies) 홈페이지의 소개글에 특별히 기재되어 있다³⁸는 팩트가 확인되어 있을 뿐이다.

III. 일본군‘위안부’ 부정론과 그 공허함

- Ramseyer의 비약의 보다 직접적인 배경은 그의 주장이 일본의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자들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Ramseyer의 2019년 글은 1990년대 이래 부정론자들이 줄기차게 반복하고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그 유사성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연구자라면 누구나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 Ramseyer의 2019년 글에는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 ‘성노예가 아니다’, ‘20만이라는 숫자는 근거가 없다’, ‘위안부는 고수익을 올렸다’,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되었다’, ‘2015년 합의에 의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친북단체 정대협이 조종하고 억압한다’ 등등, 일본 부정론자의 주장들, 그리고 그것을 베끼고 있는 한국 부정론자의

³⁶ *ibid.*, p.91.

³⁷ “Tenure Offered To Ramseyer Chicago professor to join Harvard Law School next fall”, *The Harvard Crimson*, 1998.2.5. (<https://www.thecrimson.com/article/1998/2/5/tenure-offered-to-ramseyer-pj-mark/>).

³⁸ <https://rijs.fas.harvard.edu/j-mark-ramseyer>

주장들이 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그 글의 결론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Ramseyer의 주된 주장은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법경제학 논문’이라는 외피로 싸서 재구성한 것이 2021년의 글인 것이다.³⁹

-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2006년에 출범한 아베 신조오(安倍晋三) 1차 내각 이래의 일본 정부의 주장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2021년 1월 8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본군‘위안부’ 전 면승소 판결 직후인 2월 1일자로 보강되어,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위안부 문제」라는 제목의 일본 정부의 문건⁴⁰에, ‘1965년 종결’, ‘2015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20만 근거 부재’와 함께,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 주장들은 매우 취약한 것이다. 첫째, 1993년 「코오노 담화」⁴¹에 의해 일본 정부의 강제연행 인정은 끝났다. 「코오노 담화」는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고,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이 일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고, 특히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으면 강제연행된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아베 총리는 2007년 3월 5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을 유괴하듯이 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강제성”,⁴² 즉 이른바 ‘협박의 강제성’이 문제라며 강제연행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한정했다. 위의 「위안부 문제」에 나오는 “이른바 강제연행”은 그런 의미에서의 강제연행일 터이다. 하지만 이것은 강제연행이라는 단어의 법적·상식적 의미에 반하는 것이며, 아베의 일본이 발명해낸 일본에서만 통하는 어설픈 은어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강제연행은 일본의 국가책임 성립의 요

³⁹ 단, 2021년 글에서 ‘성노예’(sexual slavery)라는 용어는 카라유키를 설명할 때만 한 번 등장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2019년 글과 마찬가지로 성노예 부정론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다. 2019년 글의 결론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Ramseyer는 ‘성노예’와 ‘강제연행(forcible military recruitment)’을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2021년 글은 ‘강제연행’ 부정론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므로, 2021년 글도 ‘성노예’ 부정론을 전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⁴⁰ 「慰安婦問題」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472256.pdf>).

⁴¹ 「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 1993.8.4.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kono.html>),

⁴² 日本参議院, 『第百六十六回国会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三号』, 2007.3.5, 9면.

건도 아니다. 「코오노 담화」가 인정하듯이,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 관여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진 가혹한 것”이었다. Ramseyer의 2021년 글에도, 일본의 국가기관인 “일본군”이 “필요로 했고”, “부추겼고”, “협력했고”, “요구했고”, “약속했고”⁴³, “위안소를 세웠고”, “허가했고”, “금지했고”, “명령했다”⁴⁴라고 되어 있다. 그것만으로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것만으로 일본의 국가책임이 발생한 것이다. 아베를 포함한 일본의 여러 총리들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 둘째, 일본 정부는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성노예가 무엇인지, 성노예에 부합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성노예에 반하는 사실은 무엇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그냥 성노예라는 표현이 싫다’라는 감정의 표현일 뿐이다. Ramseyer가 그렇게 주장하듯이, 일본 정부도 ‘강제연행이 없었으니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강제연행은 있었다. 게다가 강제연행은 성노예의 요건도 아니다. 아베 코오키(阿部浩己)의 심도있는 분석에 따르면, “노예제의 요체는 사람에게 대한 지배이며, 여기에서의 지배란 사람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심대하게 박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배의 한 형태로서 허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노예제의 본질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또 조약상의 정의로부터 명백한 것처럼, 노예제란 ‘지위 또는 상태’이며, 사람이 어떤 방법·수단·목적으로 그러한 지위 또는 상태에 이르렀는가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강요를 당해 연행되어 온 경우라도 노예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이동해서 온 사람이라도 노예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노예가 된다. 노예제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노예제조약 기초의 시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상 전혀 변함이 없다.”⁴⁵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부정론자들은 그 매우 취약한 주장들을 앵무새처럼 끊임 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코오노 담화」 지우기, 일본군‘위안부’ 지우기이다.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가 증거자료를 발견한 1992년 1월 이전, “민간의 업자가 그런 사

⁴³ J. Mark Ramseyer, op.cit. (2021), p.1.

⁴⁴ *ibid.*, p.5.

⁴⁵ 阿部浩己, 「国際法における性奴隷制と「慰安婦」, 『戦争責任研究』 84, 2015, 37-38 면.

람들을 군과 함께 데리고 다녔”⁴⁶을 뿐이라고 호언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나라 일본’으로의 복귀이다. Ramseyer의 2019년과 2021년의 글들은,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와 ‘국제학술지’의 권위를 빌려, 바로 그 취약한 ‘강제동원 부정’·‘성노예 부정’ 주장에 ‘자유계약’이라는 그럴 듯해 보이는 원근을 제공하려 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글로벌 학문공동체에 의해 좌절되었다. 일본 정부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문건이 근거가 박약한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확인된 것은 덤이다.

IV. ‘Ramseyer 사태’는 무엇인가?

- 수준 미달의 프로퍼갠더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Ramseyer의 2021년 글에 의한 도발은 글로벌 학문공동체의 놀라운 통찰력에 의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진압되었다. 여전히 Ramseyer 자신도 「국제 법경제학 평론」도 철회를 거부하고 있지만, 전 세계 학문공동체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자들은, 미키 데자키가 ‘주전장’이라고 명명한 미국에서, 전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산케이의 ‘역사전(歴史戰)’의 전선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국제학술지’에 실린 ‘하버드대학 교수’의 ‘영어 논문’을 내세워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그들은 주전장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전선에서 확실하게 밀리고 있다. 한국 전선만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철지난 부정론에 매달리고 있는 한국 부정론자들의 모습은 보고 있기에 안타깝다.
- 이 사태의 와중에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는 일본 사회의 모습은 놀랍다. 3월 10일 6시 현재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마이니찌 신문』, 『토오쿄오 신문』, NHK의 홈페이지에서 ‘ラムザイヤ’라는 단어로 검색되는 기사는 한 건도 없다. 1월 28일자 인터넷판 기사 「전 세계로 확산되는 「위안부=성노예」설을 부정, 미 하버드대 J. Mark Ramseyer 교수가 학술 논문 발표」⁴⁷ 를 올려, “미국의 고명한 회사법 학자이자 일본 연구의 대가이기도 한

⁴⁶ 日本参議院, 「第百十八回国会参議院豫算委員会会議録第一九號」, 1990.6.6, 6 면. 노동성 직업안정국장 시미즈 쓰타오(清水傳雄)의 답변.

⁴⁷ 「世界に広まる「慰安婦=性奴隷」説を否定 米ハーバード大J・マーク・ラムザイヤ教授が学術論文発表」, 『産経新聞』, 2021.1.28. (<https://special.sankei.com/a/politics/article/20210128/0001.html>).

Ramseyer 교수가, 다른 연구자의 심사를 거친 학술논문에서 ‘위안부=성노예’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논의를 전개한 의의는 크다”라고 Ramseyer의 2021년 글을 치켜세우며 그 해설·요약까지 상세하게 전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촉발했던 『산케이 신문』의 홈페이지에서도, 그 날 이후 ‘Ramseyer 사태’를 직접 다룬 기사는 단 한 건밖에 검색되지 않는다. 게다가 쿠로다 카즈히로(黒田勝弘)가 2월 20일자 서울발로 쓴 그 기사⁴⁸도, 쿠로다의 기사가 흔히 그렇듯이, 한국 언론을 인용하며 한국의 반일종족주의가 Ramseyer를 공격하고 있다는 ‘반한론’을 늘어놓고 있을 뿐, 글로벌 학문공동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괴한 침묵이다. 도대체 일본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 ‘Ramseyer 사태’는 학문 대 학문의 ‘전쟁’이 아니다. ‘학문 이전’에 대한 학문의 질타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다. 저열한 일본군‘위안부’ 지우기 기도에 대한 상식의 일갈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는 과제이다.

⁴⁸ 「“反日種族主義”ついに米国へ輸出」, 『産経新聞』, 2021.2.20. (<https://www.sankei.com/world/news/210220/wor2102200005-n1.html>).

해석의 의도성과 자료 이용의 오류

강정숙 |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1. 렘지어 연구와 오랜 주장의 요지

1) 그는 성매매(위안소일 수도 있음)가 업자와 여성 간의 계약은, 1991년 그의 연구 「Indentured Prostitution in Imperial Japan: Credible Commitments in the Commercial Sex Industry」(曾野裕夫部 역, 北法44(3.161)(김부자 제공)에서 일본의 예창기 계약은 믿을 만한 것임. 공창(창기)이 당시 그 수준 계층의 여성에 있어 수치심을 제외하면 수입이 가장 좋은 직업이었고 공창과 업자와의 계약은 제대로 된 것이었음. 전후 일본에서 예창기 계약전차금 무효, 1956년 매춘 금지되었으니 매춘은 비합법적인 것으로 지속되고 있음.

2) '위안부'도 전시 이전 후방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봄.

렘지어 1991년 기본 인식은 지속되고 있고 이 글이 일본군'위안부'를 다루고 있으나 그가 사용한 자료는 그 이전의 그가 관심가졌던 성매매여성들의 계약과 관련되어서인지 1932년이 이전의 성매매나 성매매 여성과 관련된 자료가 중요한 비중.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자신이 성매매하는 것을 알고 그 평판에 대응하고 전선에 가는 것도 알아 이에 대응한 전차금을 요구하고 계약기간이나 조건 등에 대해 업자와 주체적으로 여성들이 계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를 위해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한다는 전제도 세워둠.

2. 군위안소의 여성들의 상태에서 확대: 일본 내 창기의 상태를 근거로 이용하여 여성의 자유 의지, 그리고 대부분 6년 정도의 계약인데 그 이전에 가시자시키(貸座敷)에서 벗어난 여성들을 증거로 제시(주로 1920년대 이전). 후방에서 3년 정도이면 전차금을 갚았을 것으로 봄, 다른 직업에 비해 많은 전차금. 후방의 공창과 무면허 매춘여성의 수입, 위생상태를 비

교. 여기에 해외는 수입이 더 많았음.

3. 아마쿠사의 오자키 경험을 통해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표현을 도출. 열 살짜리 오자키가 가라유키를 전제로 한 모집인에게 300엔을 선불로 팔림. 나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13세 이후부터 성매매 시작. 이미 2000엔 빛. 그가 말하는 자유로운 계약의 의미?

4. 조선 상황: 렘의 글 2.3. 4쪽 한국의 매춘업을 다루는데 그가 이용한 道家齊一郎(ドウケ, セイイチロウ:렘지어는 Michiya Saiichiro라고 표기)의 『매춘부논고』(1928)(鈴木裕子 등 상권에 수록)에서 언급

서울 지역에서 허가받은 1,101명의 창기 중 680명이 20~24세, 25~29세는 273명. (보완: 30세 이상 38, 35세 이상 4, 40세 이상 2명 나이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이 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 무리 1,101명 가운데 294명은 5년째, 65명은 6년째, 17명은 7년째.(보완: 8년 미만 15명, 9년 미만 8명, 10년 미만 1명, 15년 미만 5명이었음. 경성이라는 가장 큰 도시에조차 이렇게 장기간 창기로 생활할 정도로 이들의 삶이 열악하고 업자는 악덕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음) 1924년 기준 인구 1,101명, 317명 신규 입, 407 409명 폐업 (미치야:미치이에, 1928년) (이 자료는 각도의 창기의 연령, 수학정도, 전 직업, 영업연수, 폐업방식 등을 다루고 있는데 렘은 경기지역만 다룸. 지역별 차이가 크고 여기에 의하면 일본과 달리 조선의 여성들은 수학정도가 낮아 무학의 비율이 높고, 영업연수가 길고 특히 주목할 것이 폐업방식임. 자유폐업은 매우 적고 소수의 자살. 질병이 있고, 대부분은 합의폐업임. 이러한 점은 이글 뒤에 첨부한 통계와 비교해 보면 열악하기로 유명한 일본 창기보다도 더 조선의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여성들을 인신매매, 사기 등으로 위안부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음. 계약을 한다고 문자해독 문제로 계약조건을 본인이 확인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음. 위안부들의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음)

5. 한국인들의 해외 성매매 있었고 무면허 성매매. 렘. 4-5쪽. 이 같은 표현을 거듭 쓰는데 이 말은 조선인들이 창기로 취업하지 않았음을 의미. 그런데 이때 일본은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창기 도항이나 창기 취업을 통계로 잡았는가는 논의할 부분임. 일본은 국제연맹 조사

단이 왔을 때나 이후 통계처리에서도 공식적인 성매매 여성이라 할 창기에 대해 창기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함. 그래서 만주 등지에 창기보다 작부, 예기, 추업부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음. 렘지어는 이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용어만 따라가서 적절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

* 좀더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위안부’라는 용어는 어떻게 출현하였을까. 위안소에 있는 여성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고민한 결과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라는 용어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위안부라는 용어를 일본 정부 부처에서는, 외무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창기라는 용어보다 적절하게 여겨서 패전 이후 내무성에서 특수위안부라는 용어를 빌려간 것은 아닌가?(강정숙, 「일본군 위안소 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2018.4.)

6. ‘위안부’ 총원 (렘. 2-4. 5쪽)

일본인 여성: 일 내무성 통첩 1938.2.23. ‘위안부’를 실질적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고 있으며, 21세 이상으로 제한함. 성매매 가능 연령: 일 국내 18세, 조선 17세, 조선 여성으로서 국외로 이동할 경우 일본제국의 영향권, 운송수단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식민지 예외규정이 아니라 일본인과 같은 규정 즉 21세 미만이면 국제법을 어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해석이 강력.(국제법학자분들 해석 요청!)

렘지어는 여성 보호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 이용. 조선의 신문 등에서 여성에 대한 불법적 모집인들의 사기 사건은 정부나 일본군과 무관함을 강조.(한국의 연구가 아직 이 관계를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 불법 모집업자들의 준동은 군‘위안부’ 모집에 이권을 주고 결탁한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불법적 행위로 검거 소식은 있으나 이들에 대한 판결과 구체적 처벌기록(국가기록원 소장자료 조사)이 없음. 그리고 여성 모집을 위한 자금출처로서 육군 임시군사비 등에 대한 관심. 인신매매범 하윤명, 배장언 등의 신분문제도 좀더 분석되어야 할 과제. 일제시기를 복합적 구성물로 보아야 함. 일선 경찰과 군, 조선총독부 수뇌부 생각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렘지어는 내무성의 적극적 대응으로 여성 보호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1938. 남지나군의 여성 급구요구에 대한 일 내무성의 대응 등도 함께 함께 볼 필요가 있음.

7. 군 위안소 상황

계약기간: 렘 6쪽 보통 2년만 명시. 일본 계약은 보통 6년, 한국 계약은 3년이라고 함. 조선을 3년이라 한 근거? “버마에서 몇몇 한국 위안부 여성들이 계약은 1년(예: 여성, 1997년:1-19)에 6개월 정도” 이 역시 근거가 불명확.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編, 1권에 위 면에는 이러한 내용이 아예 없음

계약금: 6쪽. 렘지어는 상해 위안소는 도쿄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지불했다고 함. 그런데 그가 제시한 것은 견본계약서이고 나가사키와 오사카 지역의 경찰과 매춘업소 등이 협업하여 일본군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각지에서 여성들을 모집. 조선과 달리 지자체가 역사가 강한 각지 경찰서로부터 사기, 인신매매 와 같은 일을 하면서 ‘황군’을 거론한다고 내무성 외무성 육군성 등에 질문이 쏟아지자 내무성이 정리한 문건이 1938년 2월 23일 자료.

렘지어는 육군성 등이 작성한 여러 자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오류. 서류 중엔 준비안건으로 정식 문서로 완성되지 않은 자료(여성: 1997-1-쪽)도 있으나 모두 시행된 자료로 판단함.

자료가 부정확. 렘지어 6쪽. “그들은 2년 기간 전차금 수백 엔을 지불. 1937년 상하이 위안소에 징집된 일본 여성들을 위한 견본 계약서는 500엔에서 1,000엔 제공” 등등을 언급하나 그가 제시한 근거자료(1938년 내무성, 스즈키 외 1-124)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음.

8. 馬來軍政監, 위안시설 급 여관 영업준수규칙제정의 건(鈴木裕子 외, 상 433) 이 규정엔 구체적 계약 사례는 없는데 렘지어 6쪽엔 1500엔 전차금관련 계약을 언급. 鈴木 437쪽엔 1500엔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계약에 기초한 분석이 아니고 1500엔일 경우 할 조치에 대한 설명임. 규정이므로 그러한 규정에 적용되는 여성들에 대한 설명은 없음. 다만 규정으로 될 정도라면 그 수준의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은 가능할 듯.

9. 계약조건 3.4 “(말라야 규정은) 성매매업소가 여성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성매매 여성 1인당 (일본) 우편 저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8의 규정 중 3조 “고주는 가업부의 매월 가고의 3/100을 지방장관이 지정한 우편국에 가업부 본인의 명의로써 저금하고 가업부가 폐업할 때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임. 1943.11. 이러한 규정이 나온 배경과 현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

관리인 일기(안병직 해설)와 몇 명의 군‘위안부’ 구술이나 주변 증언 등에서 저축, 통장 등의 이야기가 있음. 관리인 일기에서는 말라야와 같은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여성들의 자발적 대응으로 보이거나 말라야와 같은 버마 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 버마, 라바울 등지에서 저축통장을 가질 수 있었음은 확인된 바임. 그리고 빛을 갠고 귀국한 군 ‘위안부’들이 있었음. 그러나 귀환시기 여성들의 상태를 보면 이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의문임.

저축통장/빛을 갠고 귀향/이러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생존자는 배치지역, 배치시기, 전쟁상황, 피해생존자의 연륜과 요령 등이 다각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중국(만주, 본토 등)는 여성 자율 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편이나 점령 초기 버마와 라바울 등은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반경이나 생존을 위한 지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음.

10. 자료 등 평: 그는 군‘위안부’제가 시행되던 시기를 중심으로 자료를 사용하기보다 전전 일본이나 가라유키 경험을 통해 연장하여 군‘위안부’에도 적용하려 함.

*렘지어의 참고자료: 군‘위안부’와 관련한 일차 자료는 주로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編, ‘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 1-4(龍溪書舎, 1997-98). 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編, 『日本軍 ‘慰安婦’關係資料集成』上下(明石書店, 2006)에 수록된 자료를 주로 사용. 그런데 군‘위안부’의 기한, 연차금 등 그의 입론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로 보긴 어려움.

- 참고문헌에서 저자나 필자 이름을 틀리게 발음하거나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솔한 사례는 굳이 지적하지 않음. 자신이 정말 참고했다면 이렇게 참고문헌을 달 수 있을까 할 정도임. 예를 들어 5쪽 (Nihon, 1994)--->宋連玉, 『日本の植民地支配と国家的管理売春--朝鮮の公娼を中心し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通号32, 등등

11. 렘지어 논문 등과 관련한 대응 속에서 되새길 부분들. 우리가 보완해야 한 것들. 렘지어들의 논리는 ‘위안부’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 각종 차별과 반인권적 행위라는 것을 존속시키는 논리가 함께 있음. 연구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것들: ‘위안부’ 수, 초기 연구 가설들 점검요.

표 1937년-42년간 조선 및 일본의 창기. 예기. 작부. 여급의 수

	창기		예기		작부		카페 및 바 여급		대작부업자							
	조선	일본	조선	일본	조선	일본	조선	일본	조선	일본						
1937	조	1,647	47,217	조	4,953	22,541	*79,868	85,699	조	1,691	111,284	조	235	9,238		
	일	1,946		일	2,211				일	404		일	2,599		일	235
	기	1		기	-				기	-		기	2		기	1
	합	3,594		합	7,164				합	1,734		합	4,292		합	471
1938	조	1,703	45,705	조	5,216	22,649	*79,565	83,754	조	1,733	98,437	조	238	9,012		
	일	1,923		일	2,161				일	426		일	2,522		일	231
	기	1		기	-				기	-		기	2		기	1
	합	3,627		합	7,377				합	1,762		합	4,257		합	470
1939	조	1,866	39,984	조	6,122	*79,908	*74,472	*74,472	조	1,956	*91,946	조	303	8,514		
	일	1,845		일	2,226				일	351		일	2,346		일	235
	기	1		기	-				기	-		기	-		기	1
	합	3,712		합	8,348				합	1,796		합	4,302		합	539
1940	조	2,157	35,120	조	6,023	*74,882	*65,278	*65,278	조	2,145	*76,930	조	247	7,637		
	일	1,777		일	2,280				일	216		일	2,226		일	233
	기	-		기	2				기	-		기	-		기	-
	합	3,934		합	8,305				합	1,616		합	4,371		합	480
1941	조	2,010	32,539	조	4,828	*69,077	*67,677	*67,677	조	1,998	*65,261	조	248	7,012		
	일	1,803		일	1,895				일	292		일	1,893		일	226
	기	-		기	-				기	-		기	-		기	-
	합	3,813		합	6,723				합	1,602		합	3,891		합	474
1942	조	2,076	26,901	조	4,490	*61,311	*58,557	*58,557	조	2,227	*57,007	조	250	6,564		
	일	1,774		일	1,797				일	240		일	1,644		일	219
	기	-		기	-				기	-		기	1		기	-
	합	3,850		합	6,287				합	1,616		합	3,872		합	469

자료 : 1) 조선총독부, 1936년-1942년도 『통계연보』

2) 내각통계국편, 제 57회, 제 58회, 제 59회 『大日本帝國統計年鑑』 1936-38년도

3) *가 있는 1938-40년 분은 『昭和國勢要覽』

4) 1941-42년도 일본부분은 內務省 警保局 자료, 「內務省 警保局 種村資料」(秦郁彦, 『慰安婦と戰場の性』 新潮社:東京, 1999, 30에서 재인용)

참고 : ()내의 수는 『大日本帝國統計年鑑』에 수록된 일본의 관련자 총계. 일본 통계에는 창기에 조선인 등 외국인인 없음. 조선에서 '기'는 기타.

조선에 있던 일본인 여성의 수와 조선인 여성의 수 비율을 유념해야 함. 표는 강정숙(2005)(2010)등에서 제시.

세계질서와 역사수정주의의 정치

김득중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 이 발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어떤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갖는지를 보고자 한다. (1) 시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전후사 속에서, (2)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램지어 사태'가 의미하는 바[mapping]를 밝히고자 한다.

1. 전후 질서 형성과 식민지 '위안부' 문제

- 미국이 만든 전후 질서
 -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파시즘·군국주의의 철폐, 제국-식민지 관계의 해체를 가져오는 계기였다.
 - 미국의 전후처리는 단지 군사적 승리와 점령에 그치지 않았다. 군사 점령과 법적 처리를 통해 미국식 가치관은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이는 미국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 미국은 재판이라는 법적 절차와 전범 처벌을 통해 국제적 규범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고, 그 규범적 가치는 '민주주의'라고 주장되었다. 전범재판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의 가치를 드높이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가치관의 새로운 정립은 미국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전쟁규범 위반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는 전례 없는 재판을 실시했다.
 - 독일, 동아시아에서 열렸던 전범재판은 인류가 전쟁을 회피하고 극단적 살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했으나, 전쟁후 처리는 법적 형태로만 진행되었고, 현실정치의 역학관계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많은 숙제를 남긴 채 재빨리 봉인되었다.
 - 종전과정에서 미국의 의도가 전면적으로 관철되면서, 정의는 선택적으로만 실현되었다. 식

민지문제, '위안부' 같은 여성인권 문제, 강제동원 등의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채 봉인되었다.

- 전후 세계질서는 미소 대결 냉전으로 급속하게 재편되었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하는 동맹으로 변신한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제국주의적, 반인륜적 악행들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은 채 봉인된 것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반)식민지·점령의 문제이자, 여성인권의 문제이며,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 -이는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질서이다- 가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는 유산이자 숙제이다.

○ 식민지 역사 문제의 분출

- 그러나 냉전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위안부'들의 목소리는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반공·냉전 지역공동체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1990년 독일통일, 1991년 소련 붕괴,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
- 최초의 증언이 이루어진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이 높아지고 시민운동의 발전의 발전이 있었으며 이에 대항한 일본 우익세력 역공세가 증가하였다. 이제는 램지어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논문' 발표를 계기로 미국으로 전선이 옮겨졌다. 한 명의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증언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 일본군'위안부' 경험에 대한 증언은,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일본-한국이 위계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동북아 질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삼국 간 균열은 지정학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국내적 정치 관계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본군'위안부'·징용 등의 역사인식 문제는 균열, 특히 한·일 간의 균열을 더욱 더 넓히고 있다.
- 한 분의 할머니 증언으로부터 시작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식민지와 전쟁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여성인권을 드러내는 한편, 식민지란 무엇이었던가, 일본은 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시도하는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성립된 세계질서와 그 가치는 제대로 된 것이었던가, 인권은 과연 실현되고 있는가 라는 깊숙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제기과 이에 따른 시민운동은 단지 특정한 사실을 밝혀내는 의미를 뛰어넘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 주도로 성립된 세계질서에 대한 근본적 의

문을 제기하게 하는 현재성과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다.

2. 역사수정주의의 이념과 현황

- '도쿄재판사관' = '점령사관' = '연합국승리사관'에 대한 수정
 - 전범재판은 '승자의 정의', '정치적 정의'에 불과하다고 주장.
 - "점령정책 및 좌익세력의 횡포에 의한 우리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단죄와 자학적인 역사인식을 재고하고, 공정한 사실(史實) 검증에 기초하여 역사의 흐름을 해명하고, 일본 및 일본인의 명예와 긍지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茶本繁正, 1995)
 - 미군이 만들어 놓은 전후 역사학에 대한 전면적 비판과 수정.
 - 일본 근현대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한 수정을 통한 재구축을 시도.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식민지배 및 제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메이지유신 이래의 근현대사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특정 사건(난징학살, '위안부', 징용)에 대해 일본이 취하고 있는 역사인식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근현대사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음.
 - 역사수정주의는 아베 정권 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고, 이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면, 2차 대전 배상=전쟁사죄가 종료했음을 의미(재무장과 '보통국가'의 탄생).
 - "100년 전 세계에는 서양 제국을 중심으로 해 식민지가 확대돼왔다.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배경으로 한 식민지 지배의 파도는 19세기 아시아에도 덮쳐왔다"며 (아베 신조, 2015.8.14.). "일러전쟁은 식민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줬다"
 - 청일전쟁, 러일전쟁부터 일본 근현대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러일전쟁을 "백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아시아 인민을 해방시키는 전쟁"이라고 주장.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쟁으로 휩쓸려간 어쩔 수 없는 경위(가토 요코)와 '도쿄재판의 일방성을 거론하며 '백인제국주의'의 지배논리에 대해 대항. '백인제국주의'의 지배논리에 대해 대항하는 인종주의적 관점을 취하는데, 이는 당시의 일본 지배층이 말했던 것과 똑같음(대동아공영권).
 - '위안부' 문제 : '강제동원'을 의도적으로 이슈화하는 한편, 식민지 지배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완전히 외면하고 부정. '위안부'를 '자유로운 계약 주체'로 상정하는 램지어의 논문은

이런 맥락에서 제출됨.

○ 피해자화 / 법적 책임

- 일본 역사 인식의 독특함은 ‘그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점.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식민지 지배와 착취, 강제동원 등은 알지 못하지만, 도쿄공습·원폭 피해 등은 끊임 없이 상기하는 주제이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 식민지 피해에 대해 “도덕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은 인정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 전쟁 책임의 문제가 ‘법적’ 죄의 문제로 국한됨.

○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발전’

- (1) 제도적 안착 :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유동적으로 진행되다가 최근 지속화, 제도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이종원, 이지원)
- (2) 대중화 : 또한 일부 우익 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한 대중을 흡수하면서 저변을 넓히고 있음. 서점에 당당히 전시되고 있는 ‘혐한론’, ‘혐중론’ 서적은 이런 적대의식을 통해 주체를 형성하려는 지식 소비자들이 광범위하게 있다고 봐야함. 내셔널리즘을 강화하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지속.
- (3) 세계적 네트워크 형성 : 일본 역사수정주의는 일본 국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미국을 넘나들며 전파되고 서로 상승작용. 한국의 ‘위안부’ 부정론자들은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주장을 다시 일본으로 수출. 일본 우익세력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연대가 형성. 램지어 논문은 미국 핵심 아카데미에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 미-일-한 네트워크의 실현.

3.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왜 미국을 ‘주전장(主戰場)’으로 삼았는가?

○ 역사 이데올로기라는 싸움터

- 지배를 위해서는 군사력 같은 물리적 힘(폭력)으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가치관, 지식, 역사인식 등에 대한 정신적 우위가 필요하다는 점은 정치적 성향의 좌우를 막론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다(cf. Edward Said, Carl Schmitt 등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다룬 많은 연구자들).

- 공동체 이데올로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사인식 문제. 공동체가 어떤 내용의 기억을 형성하는가는 그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걸린 중요한 문제.

○ 상황들

- 국내 평정 : "A급 전범은 일본 국내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일본 관리의 발언).
- 반일 포위망 돌파 : 역사수정주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인식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음. 전쟁책임 추궁이라는 상황을 돌파하고자하는 수세적 공세. 역사 문제를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설득력의 문제'라고 간주하고, 대규모 재정 지원과 연구자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계획.
- 패권국 미국 : 역사수정주의자들이 미국을 주전장으로 간주한 이유는 미국에서 소녀상이 계속 세워지는 상황에 대한 반작용이 아님. 불리한 상황에 대한 대응 수준에서 미국을 주전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현재의 세계 질서를 만든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여론을 일본에 우호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이길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 이것이 중요한 점.

○ 미국의 입장

- 공식적 입장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강제적인 일본군 성 노예(enforced sex slaves)'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고 언급(2012. 7.9.). 미 국무부 "위안부는 인신매매·지독한 인권침해"(2012.2.18.)
- 현실정치적 측면: 재봉인. 한·미·일 협조체제를 금가게 하는 어떤 시도도 인정하지 못함.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한국.

○ 역사수정주의와 현실 정치

-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전후에 만들어진 세계질서의 가치와는 상충. 제국주의 시대로의 회귀, 역사적 반동이라고 할 수 있음. 역사수정주의는 세계질서의 '수정'과 '수용' 사이에서 좌우로 동요.
-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초한 발전을 추구하지 못한 일본의 잘못. 위로부터의 주어진 민주주의는 시간 속에서 체화되지 못하고 반동화의 길을 걷게 됨.

- 전후 일본은 미국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미국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일본에서 역사수정주의가 대두한 것은, 전후 점령시기에 미국이 추진한 위로부터의 민주개혁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 식민지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한·중 현실타파세력과 미·일 현상유지세력으로 구별될 수 있지만, 현실정치적 측면에서는 이 구도가 그대로 관철되기 어려움.
- 역사수정주의는 '보통국가'로 재탄생하려는 일본이 포기하기 어려운 이념적 목표. 역사수정주의와 세계질서의 보편적 가치와의 충돌이라는 모순은 미국이 추진하는 태평양지역에서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라는 현실정치에 압도되면서 외면, 묵인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정쟁을 넘어 토론으로, 식민지 공창제와 인신매매⁴⁹

박정애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위안부=공창≠성노예’를 둘러싼 정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전쟁 및 식민지 책임을 요구한지 30년이 넘었다. 일본정부는 정부조사를 통해 일본군‘위안부’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역사적 교훈을 위해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계기로 인권 및 전시 성폭력의 개념이 확장되고 피해자 중심 접근의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가해책임을 부정하는 역사부정론자들의 공세도 계속됐다. 이들은 ‘위안부’의 성격을 둘러싼 ‘강제성’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강제 동원된 성노예는 없다고 했다. 그때마다 공창제가 소환됐다. ‘위안부’는 공창이라서 자발적으로 상행위를 했으므로 일본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일본정부에 책임을 요구하는 세력은 이 도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면서 ‘위안부’는 공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역사부정론자들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문헌자료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골몰했다.

공창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강제성 여부가 ‘위안부’ 문제의 쟁점이라고는 하지만, 학술 영역에서 그 논쟁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었다. 근대 일본의 공창제가 실시되고 있던 지역의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실시 실태는 거의 드러난 바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 새로 설치한 일본군 위안소가 어째서 일본의 공창시설과 같은 것인지 설명하는 논문도 보지 못했다. ‘위안부’ 문제의 쟁점은 학술 영역보다 주로 미디어와 정치 영역에서 생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우익세력이 ‘위안부는 공창이라서 자발이다’라는 프레임

⁴⁹ 이 발표문은 박정애, 2019,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 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페미니즘 연구』 19(2).를 토론회 주제에 맞게 편집한 것입니다. 원기 자료로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을 내던지면 미디어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여기에 한국 사회가 즉각 반응하면서 다시 미디어가 ‘위안부는 공창이 아니라 강제이다’는 이른바 전문가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여론을 형성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위안부’ 문제는 정쟁화(政爭化)되었고 그 강제성을 입증해서 공창제와는 다른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로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곧 연구 이전에 공공 기억의 장에서 ‘위안부’ 문제는 ‘공창=자발’, 또는 ‘비공창=강제’ 사이의 양자택일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강제성’에 방점을 두고 정쟁을 돌파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정진성은 ‘위안부’ 자료의 발굴 보도가 언제나 ‘가장 큰 쟁점인 강제성을 해명했는지의 여부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해자증언과 기존에 정리된 문서자료를 통해 ‘이미 상식이 되어 있는 사실’을 문서 발굴 보도를 기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정진성, 2018: 19).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증거의 결핍’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를 둘러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함에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 여성주의 관점과 역사적 정보들에 기초한 역사적 상상력이다. 이를 통해 ‘위안부’와 공창 관계를 묻는 질문에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근대 일본의 공창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15년 가까운 오랜 기간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소의 양태와 ‘위안부’의 실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내세운 근대법인 공창제의 법률 조문을 내보이며 자유와 평등 실현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가. 우리는 어째서 근대 식민지 법조문의 이면에 배인 민족 차별에 민감한 만큼 젠더 차별에는 민감하지 못한가.

2. ‘위안부’ 피해 부정과 공창제 소환

역사부정론자들은 ‘위안부’는 공창이라서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며 성노예가 아니라고 공격한다. 역사적으로 공창제가 무엇인지, 특히 근대 이후 제국 일본의 공창제가 어떠한 내용과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들은 공창제와 위안부 제도를 동일시하며 위안부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외에 역사부정론자들의 ‘위안부=공창론’을 학술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위안부가 공창이라서 자발적이고 부도덕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 삼아야 할지 난감

해지는 지경에 이른다.

역사부정론자들이 논거로서 내세우는 연구는 하타 이쿠히코의 책이다. 그는 일본의 근대화 기획에 충실하게 짜였던 공창제를 옹호하고 부국강병이라는 근대적 가치를 중심에서 수행했던 병사와 도시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유지됐던 공창제를 근대적 가치라 여겨지던 '자유'에 입각한 제도로 이해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여성들이 공창으로 유입되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도덕성 문제이고 성적 피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는 주장이다(奏郁彦, 1999: 27-175).

일본 본국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근대 공창제에 대한 관점도 반여성적이라 할 수 있지만, 식민주의에 대한 인식도 없다. 식민지나 관동군 지배지역 등에서 시행되었던 공창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타 이쿠히코가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군'위안부'제도가 바로 공창제이며, 그 수도 많아야 2만 명 전후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奏郁彦, 1999: 406).

역사부정론자들에게 맞서는 사람들은 '위안부 제도와 공창제는 다르다'거나, '공창제는 위안부 제도의 배경으로서 연속선상에 있다'거나, '위안부 제도는 전시 공창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일본정부와 군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주장을 전개한다. 특히 '위안부=공창론'에 대응하여 '위안부≠공창'이라는 주장이 전면으로 내세워지고 서로 공방을 펼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위안부'가 공창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로서의 '순결성'을 가늠하는 지표처럼 인식되어 버렸다.

1990년대 초반 학술적 연구에 앞서 '위안부 피해'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을 때 한국의 운동단체에서도 '위안부는 공창이라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망언에 대항해 '조선인 위안부는 공창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특히 운동단체 내부에 조선인 '위안부'가 겪은 민족차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기도 했는데, 이는 유감스럽게도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1993년 8월 일본정부를 향한 성명서 가운데 "위안부는 당시 공창제도 아래에 있던 일본인 매춘여성과는 달리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군대에서 성적위안을 강요당했던 성노예였다"는 등의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던 것이다(야마시타 영애, 2012: 125-126). 그러나 한국의 '위안부'운동 단체는 피해자, 학자, 정치세력, 시민의 다각적 자극을 받으며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왔다(이나영, 2010: 45).12)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근대 공창제 연구가 진전되고 둘

사이의 공통된 반인권적 성격을 지적하는 연구가 축적되면서 한국 운동단체 내에서 드러내놓고 ‘위안부는 공창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래도 공창과 ‘위안부’의 관계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논하기 힘든 주제다. 이에 관한 관점과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연구가 꽤 축적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학술적 논의에 기대지 않고 각자의 젠더 감각에 따라 ‘자유롭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이영훈이 반일종족주의를 통해 ‘위안부’는 공창과 같은 존재라서 일본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자, 이를 비판하는 인권법 학자가 ‘위안부는 공창제와 다르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근대사회의 공창제는 성매매업을 허용하면서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와 국민 보건을 위해 국가가 관리·운영에 간섭하는 것”이며 “어느 나라든 인신매매를 인정하면서까지 성매매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일본군은 전장에서 군인들의 성욕 해소를 위해 위안소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국가권력을 이용해 시행”했으며 “그 운영 방법은 폭력적이었고 위안부 개인의 인권은 (대부분) 철저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9. 8. 25.). 이는 명백히 틀린 주장이며, 발화자(와 이 주장을 옹호한 기자)의 성매매 여성 혐오 시각을 내보인 것에 불과하다. 법조문만을 놓고 따졌을 때 모든 근대법은 국가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국민 보건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는다. 문제는 문자 너머의 차별과 억압이며 근대법의 성격은 법체제 안에서의 충돌 지점과 법 적용 과정의 차별적이고 반인권적 측면을 따지면서 규정해야 한다. 팩트는 “인신매매를 인정하면서까지 성매매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 근대 일본의 공창제이며, 이는 부국강병이라는 근대적 가치를 수행하는 병사와 남성노동자들의 성욕 해소를 위해 공창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국가권력이 시행한 것이다. 당연히 운영은 폭력적이었고 창기의 인권은 억압당했다. 그러나 공격하는 쪽이나 역공하는 쪽이나 공창제 시행의 표면과 이면은 따져보지 않는다. 모두 ‘위안부’가 ‘공창=자발’이라면 일본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방이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는 매우 손쉽게 주목을 끌면서 대중들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반지성주의 효과일 텐데, 반지성주의자들은 그 사회가 이해할만한 수준으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 사건은 대체로 여러 가지 원인의 복합적 효과로 일어나지만 애매모호한 설명을 싫어하는 사회는 딱 잘라서 한마디로 설명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우치다 다쓰루, 2016: 25). 지적 태도란 자신이 지닌 삶의 한계를 아는 것(시라이 사토시, 2016: 60)이다. 집단이 지적 태도를 포기한 분야에서 반지성주

의를 이용한 권력강화가 일어난다.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명령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임지현, 2019: 46), ‘위안부’ 문제에서는 군관헌의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문서가 없다는 주장이 쟁점이 된다. 제대로 알려는 의지가 없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분야에서는 실증주의가 반지성주의자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 실증주의 서사가 ‘위안부’ 부정론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무기라는 지적(임지현, 2019: 65)은 적확하다.

이 때문에 여성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공창제와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은 학자들과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치열하고도 고독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정쟁이 치열한 데 비해 학술적인 영역의 논쟁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탓이다.

3. 식민지 공창제와 비역사적인 ‘위안부’ 역사상

공창제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연속성을 밝히는 실천적 연구들은 일본정부나 군이 성 관리 제도를 통해 국가권력이 허가한 틀 안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 억압과 남성에 대한 성 통제를 실천했다고 지적한다(藤目ゆき, 1997; 宋連玉, 2000).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일본의 공창제를 서구에서 비롯된 규제주의(Regulationism)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제국 일본의 법역(法域) 안에서 시행된 공창제(公娼制, Kousyousei)로서 그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창제는 흔히 ‘합법적 성매매 제도’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근대 일본의 공창제는 좀 더 복잡하고 모호하고 모순적인 것이었다. 공창제라는 말 자체도 일본어에서 비롯한 것이었으며, 1945년까지 공창제가 시행됐던 지역은 제국주의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 곧 일본과 그 식민지, 위임통치지역, 조계지, 점령지 등지였다. 곧 20세기 전반기 대 부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된 공창제를 경험한 것이다.

공창제라고 해서 법적으로 ‘공창’의 범주를 규정하고 그 규제 방식과 내용을 정한 것도 아니었다. 일본 ‘내지’의 창기취체규칙과 예기영업취체규칙 등이나, 식민지 조선의 가시자시키(貸座敷)창기취체규칙, 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 등을 아울러 공창제라고 했다. 창기나 작부, 예기, 여급을 단속하는 법도 시기마다 지역마다 호칭과 내용을 달리했다. 군사통치가 강한 지역일수록 공권력의 통제 권한이 컸고 접객여성들을 둘러싼 법적 환경은 열악했다.

또한 공창 관련 법률들을 통해 창기에 대한 성매매 허가나 예기, 작부, 여급 등 이른바 사창(私娼)에 대한 성매매 금지가 뚜렷이 대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공창제를 시행했던 일본의 관심은 부국강병을 수행하는 병사 및 남성노동자의 성병 예방에 있었으며 공창제를 통해 이러한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창에 해당되었던 예기나 작부, 여급이라 해도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있거나 성병 검진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이용한 포주의 성매매 영업도 묵인될 수 있었다. 1910년대 초반 일본군 주둔 지역인 함경북도의 예기는 다른 지역의 예기에 비해 실질적 창기수준으로 거주제한과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받았다(박정애a, 2009: 60). 국제연맹의 인신매매 금지 방침과 폐창운동의 압박으로 공창제 폐지가 시대흐름이라고 여겨졌던 1930년대에는 공공연하게 “사창(私娼) 제도가 성행하리라”(『동아일보』, 1932. 5. 26.)는 말도 나왔다.

따라서 공창제의 속성은 국가가 ‘법으로 허가하는 성매매’보다는 ‘공사창을 막론하고 관리하는 성매매’에 있다고 봐야한다. 공창제는 고유한 하나의 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 사회의 풍기 단속과 성병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성매매 시스템이다. 따라서 공창제는 지역과 시기, 그리고 정치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실체와 양상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송연옥a, 2017: 38).

공창제를 시행한 일본의 공권력은 예창기 소개업도 공인했다. 일본 ‘내지’에 비해 식민지 조선의 소개업이 더욱 ‘허술한 법률’ 속에서 업자들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인신매매를 했다. 공창제 하에서 인신매매 매커니즘이 형성되었다. 1929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여성·아동 매매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1933년에 보고서를 제출한 국제연맹 여성·아동매매 조사단은 일본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일본에서 가장 논란 것 중의 하나가 예창기 소개업이 공인되어 있는 일이며, 이 때문에 업자들은 비합법적 방법으로 여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됐다고 말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국제연맹 조사단에게 공창제가 창기의 자유로운 계약 행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인신매매 제도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업자의 불법행위는 약취 및 유괴죄나 제국외이송유괴죄로만 따져 물었다. 일본 형법에 ‘인신매매죄’라는 이름의 범죄가 생긴 것은 2005년의 일이었다. 더욱이 호주가 가계구성원에 대해서 법적 대표성을 띠는 호주제 하에서는 여성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국제사회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는 식민지에서는 더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다(박정애a, 2009: 92-99).

한편 가시자시키, 특별요리점, 댄스홀 등의 이름으로 관리된 공창시설만 큼이나 군위안소라

는 말도 다양한 성격을 내포한 호칭이었다. 군위안소가 성적'위안'시설이 아닌 단순한 군인 휴게 오락 시설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다. 1938년 타이완 핑둥시(屏東市)에 건설된 군인위안소, 1938년 6월 일본 오이타(大分) 벳부시(別府市) 온천에 마련된 육군위안소 등이 그러했다(박정애, 2015: 177-178). 반면 1938년 이후 일본군 점령하 상하이에서는 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술집(酒排)이 '위안소'라는 이름으로 영업하기도 했다(한혜인, 2014: 57).

병사들은 성적 '위안' 시설의 의미로 군위안소 외에 육군오락소, 장교클럽, 삐야(比一屋), 유곽, 기루(妓樓), 매춘숙(売春宿) 등의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병사들에게 '위안부'보다 더욱 익숙했던 말도 창기, 작부, 삐(比一), 예기, 창부, 남자군 등이었다. 1990년대 이전에 발간된 군인 회고록 속에서 거의 모든 군인 출신자들은 위안소를 공창제의 연장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용 규정상 요금을 지불하거나 시간을 지켜야 했고 "전쟁터에 있는 임시 공창시설"로 인식했기 때문에 범죄라거나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다(후루하시 아야, 2015: 182).

따라서 공창제와 '위안부' 제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대상은 성을 제공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여성이 아니라 '공창/위안부' 제도를 두었던 공권력이다. 어떠한 인식과 목적 하에서 포주가 여성의 성을 남성에게 파는 것,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 '위안 시설'이라는 명명으로 병사들에게 여성의 성을 제공하는 일을 허가하고 관리했으며,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비판에 공권력은 어떠한 논리로써 대응해갔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근대 일본의 법역 안에서 성 관리 시스템으로서 공창제와 '위안부'제도의 경계는 모호했지만, 역사부정론자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양자의 경계를 애써 가르면서 정치적인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다. '위안부' 문제는 담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실태가 따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송연옥b, 2017: 43). 영화 「귀향」이나 「눈길」, 「허스토리」 등에서 볼 수 있는 전형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했던 '위안부' 피해상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가시자세키나 특별요리점, 댄스홀 등의 간판을 내건 군위안소에서 창기나 작부, 댄서로 불렸던 '위안부'들의 피해상은 거의 공론장에서 이야기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군'위안부'피해상은 비역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창제와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연속적 측면을 검토하면서 '위안부'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학자들도 공창제의 '자유폐업' 규정을 내세워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오노자와 아카네, 2014: 271-272). 그러나 공창제 규정의 '자유폐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었으며, 또 제국일본의 법역 안에서 시기와 지역에 따라 그 규정이 어떠한 차이를 가졌는지 검토

하지는 않았다.

‘자유폐업’은 계약기간이나 전차금이 남아 있어도 창기가 폐업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규정을 말한다. 일본 내 폐창운동의 영향을 받아 1900년 일본정부가 일본 ‘내지’에서 창기취체규칙을 만들 때 해당 내용을 포함하였다. 창기는 말(口頭)이나 우편으로 경찰에게 폐업계를 낼 수 있었으며, 폐업계 수리 즉시 경찰은 창기명부에서 해당자를 삭제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폐업을 해도 전차금은 끝까지 갚아야 해서 창기 출신 여성이 어떻게 빚을 해결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박정애a, 2009: 32-33). 더욱이 유명무실했던 일본 ‘내지’의 자유폐업 규정도 식민지 조선의 공창법에서는 명문화되어있지 않았다. 조선에서 공창제가 확립되는 1916년에 ‘내지’의 공창법에서 인용한 것은 1900년의 것이 아니라 ‘자유폐업’ 규정이 없는 1896년의 공창법(가시자시키인수다옥창기취체규칙)이었던 것이다(박정애a, 2009: 118-120).

일본 공창법의 ‘자유폐업’ 규정은 창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보다는 일본의 공창제도가 인신매매제도라며 비판하는 폐창운동가들과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1931년 국제연맹의 인신매매 실지 조사단에게도 일본정부는 ‘자유폐업’ 규정을 내세우며 일본의 공창제를 옹호하기도 했다(박정애a, 2009: 119). 호주제 하에서 여성은 법적 주체도 아니었고 ‘자유폐업’도 거의 불가능했지만 공창법 조문 상의 포주와 창기의 계약 형식, ‘자유폐업’ 규정(식민지 공창법에서는 삭제)이 공창은 ‘자발적으로 돈을 버는 주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공창은 자유폐업이 가능했고 ‘위안부’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비교는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으며 비역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다.

또한 공창제와 ‘위안부’ 제도의 차이는 동일한 시기와 지역에서 시행된 양자를 비교 검토해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이에 대한 연구성과는 미흡하다. 총동원체제에 들어오면서 조선총독부가 시국을 위한 ‘위안처’로서의 의미가 있는 접객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폐업하는 방침을 취했다는 사실(박정애b, 2009: 191-224)이나 최초의 해군위안소로 알려진 상하이의 다이이치살롱(大一サロン)이 얼마 안 있어 위안소 지정을 해제하고 원래의 공창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일본군이 특별한 규제 없이 계속 이용했다는 사실(송연옥a, 2017: 26-37)은 이 부분을 해명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여성폭력을 둘러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실증주의를 넘어서려는 오늘날의 역사학은 실증 연구와 더불어 현실 사회에 말 걸기를 통한

미래 지향적 실천을 중시한다. 특히 ‘기록당해 온’ 소수자들의 역사는 문헌 기록을 넘어선 자료의 확장, 자료의 맥락적 이해와 행간의 독해, 대안적 전망 제시를 아우른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할 때 주체적인 역사 쓰기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착실한 역사적 정보 섭렵, 여성주의적 관점, 평화와 인권 중심의 미래 지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주체적인 역사쓰기는 인권 회복의 과정이다. 사회 차별의 층위 아래 있었던 소수자의 인권 침해 사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삶을 영위해왔던 소수자의 이야기를 당사자 입장에서 이야기화하고 ‘기록당해 온’ 역사를 ‘기록하도록’ 돌려주는 것이다. 인권은 개인이 자신의 일상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의미하며, 생존과 더 나은 삶을 욕망하는 모든 인간은 충분한 정보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협상과 타협, 선택과 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말을 굳이 환기하는 이유는, ‘자발성’을 따질 수 있을 정도로 20세기 전 반기를 살았던 여성들이 자율성이 보장된 존재였는지 질문하기 위함이다. 정희진은 젠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너무나 무지한 한국의 지식사회에서 성폭력, 성산업 피해여성을 논할 만한 공론장이 존재하는지 의문시한 적이 있다. 여성의 몸이 상품이나 군수품과 같이 취급된 시대의 여성의 삶을 논하면서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갔다”고 강조하는 것은 군‘위안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아니라 가부장사회가 여성의 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다른 아 니라는 것이다(정희진, 2016: 2-3, 9).

지금의 일본정부는 한반도 출신 여성의 ‘자발성’을 내세우면서 ‘피해’를 무화시키고 가해 책임에서도 벗어나려 하고 있다. 공론장에 나온 피해자의 태도와 진술을 꼬투리 잡아 성적 피해의 순결성을 흠집내면서 자신의 성폭력 가해를 희석시키는 것은 오늘날의 성폭력 가해자에게서도 흔히 보이는 태도이다. 공론장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게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 자신을 설득해보라고 몰아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이다. 현재 아베 정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피해’를 언급한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관현에 의한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문서를 찾지 못했다”는 정치적 수사로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대응 논리를 완성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언설이 사회적 저항을 낳아 정치권력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젠더 권력을 공고히 했다.

식민지 조선의 여성은 사적, 공적 공동체 안에서 자율적인 존재로서 경쟁력을 갖고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주위의 관계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주체였는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에(家) 제도, 현모양처주의 교육 정책, 공창제도 등 식민지 시기 공권력의 여성정책은 식민 권력의 부국강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을 뿐이며, 젠더차별에 ‘민도(民度)가 낮다’는 레토릭으로 실질적인 민족차별을 더한 것이었다. 여기에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 차별까지 덧붙여 있었다.

일본이 지배하던 시기, 조선 여성들은 매우 억압적인 조건 속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제도 속에서 여성의 공적 역할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대부분 제도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취업의 선택지는 열악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빈곤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성리학 시대의 ‘부덕(婦德)’과 근대의 양처현모주의 이데올로기가 혼재되어 있는 속에서 어머니처럼 사는 것도 싫었고, 중산층의 성역할규범이었던 양처현모로도 살 수 없던 여성들은 새로운 삶을 모색했으나 이에(家) 제도 하에서 법적 주체가 될 수 없었고 저임금과 성적 공격이 상존하는 일자리 환경 속에서 본인이 바라는 삶을 위한 선택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자율적 개인으로서 식민지 여성의 주체형성이란 매우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다(정진성, 2018: 23-27).

1938년 들어와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취업사기나 ‘정신대’를 빌미로 한 군‘위안부’ 동원이 일어났다.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협업하여 시행한 일본군‘위안부’ 동원은 이미 공창제 하에서 형성된 인신매매 매커니즘에 전시체제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더해져 이루어졌다. ‘위안부’ 동원은 군과 관계된 ‘작부’ 모집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고, 이송이나 위안소 도착 시점에서 공권력(지역 경찰이나 헌병)에 이름을 등록하여 공권력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제도 하에서 여성의 법적 권한은 호주에게 있었기 때문에, 소개업자들은 부모의 승낙서나 호적을 위조하거나 피해자를 자신의 호적에 넣어 직접 호주가 되거나 ‘공부도 하고 돈벌이가 좋은 곳으로 간다’고 부모를 속여 백지 위임장을 받아내기도 하였다(박정애a, 2009: 99-110).

모집 단계의 이러한 감언이설은 식민지 조선에 살면서 현재 처해있는 차별구조를 돌파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혹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공장의 노동자가 되거나, 군대에 고용된 노동자가 되거나, ‘종군간호부’가 된다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이라는 했으나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시체제 상황 속에서 모집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압박도 있었다. ‘순사가

17세 이상의 처녀를 조사하여 만주방면으로 끌고 간다'는 소문(대구지법, 1938. 5. 11.)이나 '처녀를 징발하여 전쟁터에 보낸다'는 소문(대구복심법원, 1938. 10. 10.), '처녀공출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문(전주지법, 1944. 3. 3.), '징용으로 16세에서 19세의 여자도 군수공장에 가야한다'는 소문(광주지법, 1944. 4. 15.)을 들으면서 전시체제 하에서 전쟁터나 군수공장에 가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체념 또한 있었을 것이다. 모집인과 함께 지역의 이장, 구장이나 순사가 나타날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했다.

그러나 목적지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도착한 곳인 위안소에서의 삶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고, '계약' 또는 통제에 얽매여 위안소를 벗어날 수 없었다. 만주처럼 주변에 조선인이나 중국인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탈출 시도가 잦았던 지역에서는 탈출에 실패한 '위안부'에게 본보기 처벌을 내려 탈출 의지를 꺾어놓기도 하였다(박정애, 2016: 31). 치안이 불안하고 공습이 심했던 지역에서는 '어차피 도망쳐도 적에게 잡혀 비참하게 죽는다'는 말(가와다 후미코, 2014: 171)에 갇혀 있기도 했다. '계약'이 종료되고 빛이 없어도 군의 명령으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알려져 있다(안병직, 2013: 42). '외출 일에는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구술한 피해자(김옥주(하이난), 권태임(인도네시아), 최화선(북만주의 어느 섬), 하점연(타이완 평후섬 澎湖諸島)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섬에 끌려갔기 때문에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군의 통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였다.

지금 우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여성의 피해'를 이야기하기에 역사적 상상력이 매우 빈약하다. 2007년 미국 하원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앞두고 아베 정권이 '자발성' 프레임을 앞세워 결의안을 저지하려 했을 때 부시 정권의 국가안정보안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마이클 그린은 다음 과 같은 지적을 했다고 한다. "강제적인지 여부는 관계없다. 일본 말고는 누구도 그 점에 관심이 없다. 문제는 위안부들이 비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인데 나카타초의 정치가들은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다"(☒아사히신문☒ 2007. 3. 10.). 우리는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공문서가 삭제하고 왜곡한 '위안부' 피해의 이야기를 인권과 평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채워나갈 의지가 있는지, 이를 위해 문서뿐 아니라 시공간과 목격자 및 전승자, 사진영상 등에 배여 있는 피해자의 이야기 단서를 길어 올릴 감각이 있는지, '과거 '위안부' 여성들이 겪은 고통을 현재와 미래세대에 반복하지 않는다'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토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돌리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키나와의 '위안부' 피해 연구자 홍윤신의 말(홍윤신, 2018: 110)처럼 현 시점에서 필요

한 것은 타자화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위안부’가 아니라 우리들앞에 놓인 단서들을 입체적으로 종합한 위에 ‘위안부 제도를 보는 시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식론의 확장이다.

〈참고문헌〉

- 가와타 후미코. 2014. 『빨간기와집: 일본군 위안부가 된 한국 여성이야기』. 오근영 역. 꿈교출판사(川田文子. 1994. 『赤瓦の家—朝鮮から来た従軍慰安婦』. 東京:ちくま文庫).
- 박정애. 2015.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사학연구』 120.
- _____. 2016. “만주 지역의 일본군 위안소 설치와 조선인 ‘위안부’”. 『아시아여성연구』 55(1).
- _____. a. 2009.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관리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미간행).
- _____. b. 2009. “총동원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흥업’ 억제정책과 조선의接客점 변동”. 『한일민족문제연구』 17.
- 송연옥 a. 2017. “상하이에서 본 요리점·유곽·위안소의 연관성”. 『사회와역사』 115.
- _____. b. 2017. “일본에서의 위안부 문제 연구 현황과 과제”. 송연옥·김귀옥 외.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 우치다 다쓰루(内田樹). 2016. “반지성주의자들의 초상”; 시라이 사토시(白井聡). 2016. “반지성주의, 그 세계적 문맥과 일본적 특징”. 우치다 다쓰루 역음. 김경원 역. 『반지성주의를 말하다: 우리는 왜 퇴행하고 있는가』. 고양: 이마(内田樹 編. 2015. 『日本の反知性主義』. 東京: 晶文社).
- 야카하타신문 편집국. 2017.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홍상현 역. 서울: 도서출판 정한책방(赤旗編集局. 2016. 『語り継ぐ—日本の侵略と植民地支配』. 東京: 新日本出版社).
- 안병직 역·해제. 2013.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서울: 이숲.
- 야마시타 영애. 2012. 『위안부 문제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박은미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山下英愛. 2008. 『ナショナリズムの狭間から』. 東京: 明石書店).
- 오노자와 아카네. 2014.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공창제도”.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 역음.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서울: 휴머니스트(「戦争と女性への暴力」リサーチ. アクションセンター. 2013. 『「慰安婦」バッシングを越えて—「河野談話」と日本の責任』. 東京: 大月書店).
- 이나영. 2010. “일본군 ‘위안부’ 운동—포스트/식민국가의 역사적 현재성”. 『아세아연구』 53(6).
- 임지현. 2019. 『기억전쟁 - 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서울: 휴머니스트.
- 정진성. 2016. 『일본군 성노예제(개정판)』. 서울: 서울대 출판문화원.
- _____. 2018.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실태와 식민지성”. 동북아역사재단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역사수정정책』.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정희진. 2016. “포스트 식민주의와 여성에 대한 폭력”. 『문학동네』 23(1).
- 한혜인. 2014. “중일 전쟁기 上海 지역 위안소 설립 및 관리제도의 변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와 연대』. 식민과냉전연구회·상해사범대학중국위안부문제센터 주최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 홍윤신. 2018. “오키나와 전쟁의 기억과 ‘위안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정의의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 후루하시 아야(古橋綾). 2015. “전 일본군 군인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군 ‘위안부’: 가해자의 논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藤目ゆき(후지메 유키). 1997. “女性史からみた 慰安婦 問題”. 『季刊 戦争責任研究』 18. 日本の戦争責任センター.

宋連玉(송연옥). 2000. “公娼制度から慰安婦 制度への歴史展開”. 『日本軍性奴隷制を裁く — 2000年女性国際
戦犯法廷の記録 第3巻』. 緑風出版.

奏郁彦(하타 이쿠히코). 1999. 『慰安婦と戦場の性』. 東京: 新潮選書.

역사부정과 소수자 혐오

조경희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HK 교수

1. 반복되는 소수자 왜곡

마크 램지어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부정과 함께 일본 내 소수집단인 피차별부라쿠민, 오키나와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⁰

- (1) “일본에서 정체성 정치와 조직범죄: 피차별 부라쿠에서 활동 보조금의 임팩트”(2017.1)
- (2) “부락민의 정치와 조직범죄: 부락 보조금 종료의 효과”(2017.9)
- (3) “정체성 정치의 발명: 일본의 피차별 부라쿠민”(2019.4)
- (4) “하층민들의 감시이론: 피차별부락, 재일코리안, 오키나와인의 사례”(2020.1)
- (5) “사회적 자본과 기회주의적 리더십의 문제: 재일코리안의 사례”(2021)

발제에서는 주로 부라쿠민과 오키나와, 재일조선인에 대해 쓴 (4)의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 부정론과 소수자 혐오가 연결되는 지점을 밝히고 이를 비판한다. “A Monitoring Theory of the Underclass: With Examples from Outcastes, Koreans, and Okinawans in Japan”의 논지를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⁵⁰ J. Mark Ramseyer and Eric B. Rasmusen, “Identity Politics and Organized Crime in Japan: The Impact of Targeted Subsidies on Burakumin Communities”,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2017.6; “Outcast Politics and Organized Crime in Japan: The Effect of Terminating Ethnic Subsidies”,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2018.2. J. Mark Ramseyer, “On the Invention of Identity Politics: The Buraku Outcasts in Japan”, *Review of Law & Economics*, 16(2), 2019.11; “A Monitoring Theory of the Underclass: With Examples from Outcastes, Koreans, and Okinawans in Japan”, *Harvard Law School Discussion Paper 1043*, 2020.9; “Social capital and the problem of opportunistic leadership: the example of Koreans in Japan”,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021.2.

- “소수집단의 구성원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정보에 대한 접근과 집단적 처벌을 통해 적절한 행동규범을 상호감시하는 능력과 네트워크)을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집단은 사적 이익을 챙기는 기회주의적 리더에 의해 착취되고 더욱 취약해진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제재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범죄적 기회주의자들이 그룹을 장악하기 쉬워진다”. 결과적으로 그 집단은 생산성 저하와 범죄성향 증가 등 기능장애(dysfunction) 수준을 높이게 된다.

- “기회주의적 리더들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보조금을 끌어내는 것에 집중한다. 부라쿠민에 대한 차별은 직업적 계급적 차별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부패한 조직의 지도부 자체에서 기인되는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다. 20세기 초 ‘부라쿠’라는 용어는 농촌 및 도시 빈민가에 거주하는 하층민을 의미했고, 1920년대에 불세비키의 지도아래 일본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종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을 발명했다. 그 후 부라쿠의 범죄엘리트가 스이헤이사(수평사)를 조직해 더욱 공격적인 범죄 전략으로 이어졌다. 1969년 국가보조금을 획득하면서 부라쿠는 야쿠자와 꾸준히 연결되었고, 일본의 기업과 세무소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 2002년에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폭도(mob)들이 점점 사라져갔다.”

- “재일코리안들은 원래 독신, 남성, 교육수준이 낮은 단기체류자들로, 낮은 사회자본으로 인해 범죄를 반복했다. 해방 후 제주에서 혁명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으로 정치적 이민을 했고, 일본에 남은 기회주의적 좌파들과 함께 무질서한 동포들(inchoate population)을 통제하고 북한으로 돈과 사람들을 보냈다. 총련 학교는 일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유지하면서 일본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일본어와 수학, 과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부라쿠민도 코리안도 지적이고 세련된 사람들은 일본사회에 융합했다.”

-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사람들 또한 자신의 엘리트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오키나와인은 토착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며 종족성의 주장은 기지에 반대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다. 대부분의 오키나와인은 후텐마 공군기지를 원하는 한편, 오키나와 엘리트들은 정부로부터 더 높은 보조금을 받고 본토 활동가들은 반미를 내걸어 오키나와 의제를 추구한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북한과 중국의 적대적인 정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군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미군기지의 범치는 기지 밖의 기타 외국인들보다 훨씬 낮다.”

2. 램지어 논문의 비학문성과 비윤리성

- **비정상적 논문 형식:** 램지어의 글은 40쪽이라는 일반적인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소제목까지 포함하면 7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문헌을 150개 이상 기재하고 있다. 상당한 정보량을 담은 자료집과 같은 구성으로 반복적인 내용이 많고 논지를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구성의 난잡함과 교묘함이 전문성으로 포장되었다는 점이 이 글의 첫 인상이다.

- **부적절한 인용과 맥락의 탈취:** 전반적으로 오타와 부정확한 정보 기재가 많다. 역사서술에서 내무성, 사법성,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1920-30년대 사법성 조사과에서 편찬한 『수평운동 및 이에 관한 범죄연구』(1927), 『내지의 조선인과 그 범죄에 관하여』(1930)⁵¹는 과거 대일본제국의 식민주의적 지식과 사상을 반영한 자료인데, 그는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는커녕 통치자의 시선을 그대로 따르고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학문적 축적을 무시하고 학문윤리에 어긋나는 태도를 피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부분 관료출신자나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우파 저널리즘 자료를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있다. 예컨대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높다고 강조하는 재일조선인의 범죄율과 복지수급율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공안출신자의 인터뷰를 근거로 삼았다⁵². 또한 “부라쿠민들은 교육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일에 대한 무심한 태도를 취했다. 도박과 술을 거둬했고 혼외 자녀를 낳는 경향과 함께 성에 대한 난잡한 태도를 보였다”와 같은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내용이 아무런 출처표기 없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부락차별 연구나 재일조선인 연구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온 후지노 유타카(藤野豊)나 히구치 유리치(樋口雄一)와 같은 역사학자들의 글의 일부를 그 취지와 반대의 맥락에서 인용하는 의도적 찬탈도 눈에 띈다.

⁵¹ 長谷川寧, 『水平運動並に之に関する犯罪の研究』(司法研究報告書集 5-4, 司法省調査課, 1927. 三木今二, 『内地に於ける朝鮮人と其犯罪に就て』(司法研究報告書集 17-2), 司法省調査課, 1933.

⁵² 菅沼光弘, 『ヤクザと妓生が作った大韓民国』, ビジネス社, 2019.

심지어는 히구치의 글을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의 사쿠라이 마코토(桜井 誠)를 인용한 같은 단락에 배치하는 등(27쪽) 기존연구의 가치와 맥락을 왜곡하는 용납하기 어려운 비학문성을 보이고 있다.

- **역사적 사실 왜곡:** 램지어의 글의 논지는 한마디로 부라쿠민, 재일조선인, 오키나와인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부재했던 결과, 좌파 기회주의자들이 폭력적으로 집단을 장악해 빈곤, 범죄, 마약, 이혼 등 기능장애(dysfunction)를 일으켰고 그것이 차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나 ‘기능장애’와 같은 사회과학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내용은 역사왜곡과 소수집단 혐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예컨대 그는 1)‘부라쿠’라는 용어는 단지 빈민가에 거주하는 하층민을 의미했다고 하면서 신분차별의 대상이었던 ‘피차별 부라쿠’와 일반적인 슬럼을 혼동시키고 있다. 그는 20세기 초 빈민문제를 다룬 여러 르포르타주를 참고하는데 ‘부라쿠’는 일반적인 ‘빈민부락’과는 전혀 별개의 범주임은 물론이다⁵³. 2)재일조선인 복송문제에서 “그들 중 가장 사회화되지 않은 회원들이 복송되었고 그들의 사회화를 막기 위해 총련 지도자들이 조선학교를 정확하게 설계했다”고 썼으나, 당시 총련은 조국건설에 이바지한다는 명목으로 예술가나 기술자 등 우수한 인재들에게 귀국을 장려했다. “사악한 리더와 우매한 동포들”이라는 프레임은 재일조선인 운동사의 실상과 거리가 먼 빈곤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3)오키나와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미군기지 건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반복되는데 오키나와현의 공식 홈페이지만 봐도 기지 부담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입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램지어의 견해가 근거 없는 사실왜곡임을 알 수 있다.

- **차별부정론:** 램지어는 소수집단에 대한 일본인들의 차별이 그 집단에 대한 편견과 멸시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집단적 성향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결과 발생하는 ‘통계적 차별 (statistical discrimination)’임을 강조한다. 즉 부라쿠민들의 범죄성향으로 업무능력이 떨어진 결과 고용주가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고, 조선인들의 낮은 일본어 능력과 비위생성 때문

⁵³ 이에 대해서는 램지어도 인용하고 있는 작가 가도오카 노부히코(角岡伸彦)가 반론하고 있다.
<https://kadookanobuhiko.tumblr.com/post/619614917566267393/>

에 집주인이 그들을 싫어했다는 등이다. 램지어는 통계적 차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소수 집단의 범죄적 성향에 있다고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차별을 합당한 것처럼 표현한다. 그는 ‘통계적 차별’이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근대 이후 지속되어 온 부라쿠, 조선인, 오키나와 사회가 경험해온 빈곤, 소외, 낙인 등 구조적 차별의 중층성을 축소시키고 차별의 책임을 소수집단 스스로에게 귀착시킨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 왜 부재했고 ‘기능장애’를 일으킨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묻지 않은 채 소수자 집단을 차별을 유발하는 사람들로 정체화하고 있다. 그의 논문은 소수자 차별의 역사와 현실을 부정하는 행위자체가 혐오발화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4. 계급혐오와 아시아 연구의 기만

- 램지어가 기본적으로 반공주의와 좌파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일관된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그의 소수자 혐오는 인종차별보다는 하층민에 대한 계급차별적 성향이 강하다. 예컨대 하층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통계적 차별’로 합리화하는 한편 유대인과 같은 부유한 집단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심각한 폭력과 약탈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경우 높은 사회적 자본이 있었는데도 학살을 당했다는 점에서 폭력과 차별의 희생자로 인정되는 반면, 하층민 소수집단의 경우는 차별은 집단의 성향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반공주의·신자유주의적 계급결정론에 따라 소수집단의 네트워크를 ‘범죄적 행위’로 간주하고 차별을 피해자의 자기책임으로 돌린다. 이것이 자유로운 학술연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난 인종-계급 혐오에 해당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 그의 왜곡된 계급결정론은 이론상으로는 아프리가계나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여기서 본 역사왜곡과 계급혐오를 흑인들에게 반영시킬 경우 그의 지위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바로 실추될 것이다. “학계 내 분쟁 때문에 에스닉 소수자의 정치와 관련된 솔직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 잘 알려지지 않는 사례들이 더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미국의 맥락에서 허락되지 않는 담론정치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실행하고 있다. 램지어의 역사왜곡은 부라쿠, 재일, 오키나와와 같은 아시아의 소수자들이 미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특이한 사례”로 소비되어 제멋대로 다

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그 동안 글로벌 위계질서를 전제로 한 미국 아시아연구의 학문윤리를 검증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

- 일본 법학을 연구해온 그가 왜 2017년 이후 역사부정과 소수자 혐오로 가득찬 논문을 연달아 집필했는가. 2018년 일본학에 대한 공헌을 이유로 일본정부의 훈장 욱일상(旭日章)을 수여했다는 사실은 그의 ‘학문’이 일본정부 및 극우세력과의 커넥션을 수행하는 홍보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동시에 더 비근한 조건으로는 혐오서적 증가로 일본군 ‘위안부’, 재일조선인, 오키나와 문제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2014년 재특회의 유죄판결과 2016년 일본의 이른바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제정 후 재특회 혐오시위가 잠잠해지는 반면 세이린도(靑林堂)나 산케이신문을 중심으로 혐오서적 출판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재일조선인 부분에서 램지어는 2015년 이후 킨들로 출판된 소수집단에 대한 역사왜곡을 담은 서적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있다⁵⁴. 램지어의 논문은 이와 같은 일본 혐오담론의 글로벌한 파급과 공명 속에서 생산되고 용인되었다.

- 더 길게 보면 이 사태는 탈냉전기 역사수정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된 글로벌한 신보수주의 운동의 귀결이다. 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 축적되어 온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 재일특권론을 비롯한 담론이 트럼프 시대 반PC적 탈진실 정동과 맞닿은 지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현상이 가져온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단지 램지어를 학문수준 미달이라는 이유로만 비판하거나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대적 정동’으로서의 역사부정이 어떻게 피해자-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 조롱과 모욕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⁵⁴ 余命プロジェクトチーム, 『余命三年時事日記』, 靑林堂, 2015. 坂東忠信, 『在日特権と犯罪』, 靑林堂, 2016. 桜井誠, 『日本第一党宣言』, 靑林堂, 2017. 産経新聞取材班, 『朝鮮大学校研究』, 産経新聞出版, 2017 등.

역사의 오용: 존 마크 램지어의 “태평양전쟁 당시 성 계약” 속 학문적 부정

토드 헨리 | UC 샌디에고(UCSD) 역사학 교수

이 중요한 토론회에 저를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 시민들이 램지어 교수의 오랜 부정론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램지어는 오랜 기간 아시아 여성, 한국인, 부라쿠민, 그 외 다른 소외 계층 등에 대한 부정론을 계속해 왔습니다. 먼저 글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위치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램지어가 백인, 이성애자, 높은 급여를 받는 남성이며, 종신 교수이자 하버드에서 기업의 기부로 만들어진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엄청난 특권과 힘을 가진 위치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심사의 과정을 거쳐 자신이 집필한 논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램지어는 이러한 학문적 생산 체계와 역사 집필의 기본적인 규약을 오용했으며, 따라서 성노예제에 대한 그의 논문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램지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좋겠지만, 최근 그가 일본 우익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았을 때 그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학자들과 시민들의 주도로 램지어가 학문적 정직성과 엄격성을 저버린 것에 대해 제재를 받도록 해당 출판사와 하버드대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저에 대해 소개하자면 저 또한 백인 미국 교수이지만, 램지어의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유태계 미국인이며 세계2차대전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후손이기에,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정론과 반유대주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국가 폭력이 어떻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에게 사용된 것과 비슷한 공격 방법을 다른 이들에게 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게이 남성이며, 성차별,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 젠더 기반 폭력이 어떻게 성소수자들을 문자 그대로 “죽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난 2주간 3명의 트랜스젠더 한국인들이 목숨을 끊었다는 슬

픈 소식을 전합니다. 현재 UC샌디에고에서 한국/동아시아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본인은, 젠더 및 퀴어 연구 강좌도 개설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조치 대학에서 일본 현대사로 석사학위를 받았던 바, 메이지 시대(1868-1912년) 제국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높은 일본어 실력을 쌓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램지어의 문제적 인용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책을 집필한 바도 있습니다. 해당 저서는 한국어 및 일본어 원문들을 기반으로 현대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와 강의, 활동을 통해 저는 성노예제라는 권력 구조가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주의, 제국주의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램지어처럼 트라우마의 역사에서 거리를 두는 입장은 고통을 지속시키고 위험하며 그의 상아탑적인 접근법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램지어가 우익 의제를 위해 교수라는 직함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가능케 한 하버드대나 학문적 진실성이 결여된 논문을 출판하려고 한 학술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하버드대와 학술지의 고위인사들은 램지어의 논문이 학문적 자유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비판한 것처럼, 학문적 진실성과 엄격성을 먼저 지키지 않고선 학문적 자유를 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교수들이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심사를 거친 논문에서의 자유 발언은 학문적 진실성과 엄격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학술지에 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문적 진실성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며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연구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신뢰성, 정직, 존중과 책임의 개념에 기초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래 세웠던 가설이나, 우리의 정치적 성향, 또는 특정 정책을 옹호하고 싶은 욕구에 반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가능한 진실하게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데이터를 잘못 전달하거나, 위조하거나, 만들어 내는 것 없이 여러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술지의 편집자나 심사원들이 램지어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학술지 편집자들과 심사자들은 신중하게 논문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논문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확인의 과정은 연구자들이 담당해야 하고, 지금의 경우 본인의 논문을 출판하려는 램지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

니다. 심사원들 역시 문제가 있다면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다른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이 사태가 벌어진 후, 저는 램지어의 여러 출판물과 기고 및 학자들의 반박을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램지어의 논문에 인용된 글들을 추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싱가포르 등지의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국제법경제저널”(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곧 출간될 예정인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 계약”(Contracting Sex in the Pacific War) 논문과 관련하여 동료들이 해온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저는“태평양 전쟁에서의 성 계약”논문의 기초가 된 글인, 하버드 로스쿨에서 램지어가 2019년 3월에 발표한“위안부와 교수들”(Comfort Women and the Professors)도 읽어 보았습니다.“태평양 전쟁에서의 성 계약”에서는 2020년 1월 중순 즈음 일본 우익 언론에 실린“위안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Recovering the Truth about the Comfort Women)와“위안부와 교수들”에서 보다는 한 발 물러선 그의 이념적 입장을 보여줍니다. 램지어의 성노동에 대한 생각은 1991년“법, 경제, 기구 저널”(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에 실린 그의 논문에서 계약 매춘이라고 명명했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제목에서, 그는 최근 논문에서도 전시하 군‘위안부’제도를 칭할 때 사용한 바 있는“신뢰에 기반한 책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를 통해 그는 1930년 이전 일본에서 공창제도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991년과 2020년 사이 램지어는 이성적 행위자 이론을 가져다가 어리고, 가난했고, 식민지배 아래 놓여있었던 수많은 아시아의 여성들에게 제도적으로 가해졌던 인신매매와 인권침해에 적용했습니다. 성노동 관련 이성적 행위자 이론은 계약 관계 속 행동의 한계를 다루지 않아 매우 문제적이라는 점도 간과했습니다. 램지어의 2020년 논문의 제목이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아닌 태평양 전쟁이라는 것도 생각해볼 지점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일본이 백인 중심적 미국과 대적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본이 침략 전쟁을 벌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램지어가 아시아-태평양 역사에 대해 미일 인식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시각은 1945년 원자폭탄 투하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헤게모니를 간과할 뿐 아니라, 1945년 이전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와 연관되는 인종, 계층, 성, 연령의 지배 구조를 부정합니다. 램지어는 이러한 분석이 전혀 의미 없다고 괘시하며, 일본군 성노예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이러한 구조적 분석을 사용하는 좌파 학자들을 비판합니

다.

램지어의 이념적 틀을 보여드렸으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램지어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핵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전시'위안소'에서 고통받았던 여성들은 민간 업자들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했다. 2)대부분의 '위안부'들은 램지어가 말하는 소위'신뢰에 기반한 책무를 바탕으로 한 게임 이론'(basic game theoretical principles of credible commitments)에 기반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따라 위안소 관리인들과의 계약을 받아들였다. 저는 이러한 주장이 역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램지어는 1930년대 이전 일본의 공창제도에 대한 문제적 이해를 적용하여, 전시 하 성노예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램지어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군대가 강제적이고 기만적으로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부터 인신매매의 비극을 기록한 수많은 학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램지어의 주장은 역사적 연구, 고통스러운 증언들,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가까워지고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던 국제기구와 초국가적 운동의 성과를 없애고 과거로 회귀합니다. 그의 논문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북한과의 갈등이 지속되며, 미투운동과 블랙라이브즈매터(#BlackLivesMatter)운동이 일어나는 와중에 출판되었습니다. 램지어는 일본군'위안부'여성들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언들을 다루지 않으며, 명백한 사실과 실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본인 자신조차 사실과 증거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바로 그 기록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램지어는 조선인 여성 및 일본 외 다른 나라 여성들의 계약서를 찾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제도의 본질에 대해 포괄적이고 확고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논문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가 없다는 점은 문제적입니다. 그의 주장의 기초가 된 계약 문서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계약에 서명했다거나 따랐다는 증거 또한 없습니다. 그가 인용한 증거를 분석해보면, 조선 여성이나 일본 외 다른 나라 여성들이 서명한 계약이나 계약서 양식 등은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는 1937년 및 1938년 중국에서 일본 여성들에 관해 남아 있는 아주 적은 양의 기록에 의존해 그들의 경험에 대해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램지어는 조선'위안부'여성들도 이러한 계약에 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적인 부분은, 이러한 계약에 서명한 이유를 경제적인 동기로 환원한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를 목격한 조선인들에 대한 증거가 아주 적다는 점도 일본군'위안부'여성들이 계

약 기간 만료 후 돈을 받았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42년 5월 초 연합군에 의해 작성된 한 심문 보고서는 조선 여성들이 동남아시아로 동원되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면서, 램지어가 자신의 논문에서는 제외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계약 모집이 “사실과 다른 표현”(false representations)에 기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부상자를 위로 방문하고, 봉대를 감고, 군인들을 전반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일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음”(was not specified but was assumed to be work connected with visiting the wounded in hospitals, rolling bandages, and generally making the soldiers happy)을 밝힙니다. 이와 같이 드문 경우에는 계약을 했을 수 있으나, 램지어가 생각한 대로 이성적 선택이나 게임 이론에 기반한 모델을 통해 모든 정보가 공개된 채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여성들이 자신이 어디로 이송될지 알았겠습니까? 빛을 갠기 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고 쳐도, 증거를 보았을 때 군인들이 주는 팁에서나 돈을 모을 수 있었지, ‘위안소’관리인들에게 돈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여성들이 은행이나 우체국에 예금한 돈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금 체계는 여성들이 돈을 가지고 도주하지 않게 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한 램지어의 무감각한 접근에서 볼 수 있듯, 그는 여성들의 주체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매춘이 어렵고 험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다”(understood that prostitution was dangerous and harsh), “짧은 기간만 일하고 그만두어도 자신의 명예에 타격이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understood that they incurred a reputational hit even if they quit after a short period), “모집업자들이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해했다”(understood that recruiters had every incentive to exaggerate)라는 주장을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지속했습니다.

민간 모집업자들이 여성들을 꺾어내는 일을 주도했으며 군인들은 위안소에서 성병 검사를 진행하는 일만 담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증거는 원본 사료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제외된 것이며, 그의 주장 자체에 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램지어의 잘못된 출처 인용을 분석한 학자들과 저는 그가 참고한 사료의 페이지나 섹션 번호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자주 인용한 1938년의 한 문서에서, 일본 관료가 경찰이 직접 모집 업자들을 동원하여 2500명에서 3000여명의 일본인 ‘위안부’ 여성들을 상하이로 이송한 것에 대해 1925년 일본이 서명한 여성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조약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는 점을 그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

고 있지 않습니다. 키워드는 인신매매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램지어의 출처 사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가 사료를 인용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가 실제로 해당 사료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의 홈페이지에는 램지어가 일본에서 자랐으며, 일본어를 구사한다고 적혀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왜 이 논문이 학문적 엄격성이 떨어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문제인 부분은 그가 계약이 아닌 인신매매로 동원된 한 위안부 여성의 일기의 번역본에서 자신의 주장을 위한 일부 구절들을 뽑아 오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일기의 출판본을 사용하지 않고, 출판되지 않은 2016년 한 익명의 신민족주의 블로그에 올라간 버전을 인용하며 출처를 국사편찬위원회라고 기재했습니다. 군'위안부'제도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의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그의 논문은 학문적 부정의 "평범한" 예시로 규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평범한"은 그가 이 역사가 어떻게 재조명되어야 할지 논의하며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램지어의 논문을 이런 식으로 일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램지어와 학술지, 그리고 하버드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이들이 모든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는 동안, 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군사주의 아래 비슷한 젠더 폭력 문제들에 대한 정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미국과 전 세계의 학자 및 활동가 동료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자 합니다.

Abuses of History:
**Academic Dishonesty in J. Mark Ramseyer's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Todd A. Henry | Department of History, UCSD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participate in this important forum. As you know, many scholars, activists, and other citizens are concerned about Professor Ramseyer's long-term record of denialism as it relates to the historical subordination of Asian women, Koreans, burakumin,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At the outset, I wish to foreground that positionality is crucial in understanding the author's propositions. We cannot ignore that he is a white, heterosexual, well-paid man writing as a tenured professor and the holder of a named chair at Harvard University. This is a position of incredible privilege and enormous power. A person in such a position must, like all professors, be held accountable for the scholarship he produces through the legitimating process of peer-review. In my view, he has abused this system of academic production and the most basic protocols of history writing, rendering his scholarship on such sensitiv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highly suspect and worthy of retraction. I still hope that the author admits his faults and offers an apology but, given his recent statements of support that sent to right-wing supporters in Japan, it is unlikely that he will change his position. It is thus the responsibility of other scholars and citizens to put pressure on his publishers and home institution to sanction what I will describe today as a lack of academic honesty and rigor.

By way of introduction and self-disclosure, I am also a white American professor, but one who has made a point of approaching the issues of Ramseyer's research in critical ways. A Jewish American and the descendent of a people who also suffered during

World War II, I am all too aware of how Holocaust denialism and antisemitism functions. Meanwhile, I appreciate how Israeli state violence continues to disempower Palestinians today, revealing how a people once persecuted can quickly adopt similar tactics of aggression historically used against them. I am also an out gay man aware of how sexism, homophobia, transphobia, and other forms of gender-based violence are quite literally killing sexual minorities; I am sad to report that, over the last two weeks, three transgender South Koreans took their lives as a result of these circumstances. I currently teach modern Korean/East Asian history at UCSD, where I also offer courses in critical gender and queer studies. I took my MA degree in modern Japanese history at Sophia University in Japan. While studying the history of Meiji-era (1868-1912) imperialism, I gained a high level of Japanese, skills that I have since used to review Professor Ramseyer's problematic citation of texts. I have also written a book on the history of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engaging with Korean and Japanese texts and arguments about the nature of modern imperialism. Through my research, classroom teaching, and ongoing activism, I have come to understand the complex interplay of sexism, racism, classism, and empire in the making of such systems of power as military sexual slavery. I realize the political stakes of scholars like Professor Ramseyer who seek to take a distanced stance on traumatic histories that continue to cause suffering. And while I express my deep discomfort with this "Ivory Tower" approach, I will not remain silent about his abuses of my profession to advance a right-wing agenda; nor can I absolve his employer of responsibility for enabling him or journals that publish work that lacks academic integrity.

To date, some actors, including the leaders of Harvard University and scholarly journals, have insisted that Professor Ramseyer's publication should be considered a matter of academic freedom. But as many critics have pointed out, we cannot have academic freedom without first upholding academic integrity and rigor. These are the basic standards to which we hold our own students; as such, how can their professors not be held to the same standards and face sanctions if they refuse to abide by them? Free speech in peer-reviewed essays must be based on academic rigor and integrity. If not,

anyone could publish whatever they want in academic journals and do so without any accountability. Although academic integrity is still being debated and depends on the specific disciplines, this standard of research is generally based on the concepts of reliability, honesty, respect, and accountability. In the research process, scholars might make unexpected findings, including ones that contradict our preliminary hypothesis, political orientation, or desire to advocate for a specific policy. As such, we must present our findings as truthfully as humanly possible: that means presenting multiple possibilities but without misrepresenting, falsifying, or inventing data. The contents of academic articles are not the same as Facebook posts which are not peer reviewed and where nearly anything goes. Here, I am not accusing the editors or the reviewers of misconduct because I do not know the specifics of how they evaluated Professor Ramseyer's essay; but, it is now their responsibility to conduct a thorough review and retract it, if necessary; the labor of fact checking should be on researchers - in this case, Ramseyer, who request to publish and validate their work, not on peer reviewers (although they can and should intervene if problems are found) or the many scholars who have pointed out his major faults.

Since this scandal broke, I have closely read Professor Ramseyer's various publications and online writings as well as scholars' various responses to his work. I want to thank my colleagues in the US, Japan, South Korea, Australia, Singapore, and beyond for their many hours of work to track down the sources cited in his articles. My discussion today draws on their collective work, especially as it relates to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soon to be published in *Th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I also read the Harvard Law School occasional paper "Comfort Women and the Professors" (March 2019) which is the basis of "Contracting Sex in the Pacific War." Along with a short article ("Recovering the Truth about the Comfort Women") published on a right-wing Japanese media site in mid-February 2020, the occasional paper provides details about his ideological stance, but which was minimized in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We now know that Professor Ramseyer's ideas about the nature of sex work date back to

as early as 1991 when he wrote an article in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about what he then called indentured prostitution. In the title of that piece, he used the same term he recently used to describe the wartime system of military “comfort women,” credible commitments, to argue for the voluntary and self-empowering nature of licensed prostitution in pre-1930s Japan. What he has done between 1991 and 2020 is to superimpose a rational actor theory of sex work, itself highly problematic without understanding the limits of a contractual model of behavior, to an institutionalized system of human trafficking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women, most of them young, poor, Asian, and colonized. It is telling that the title of the 2020 paper uses Pacific War and not Asia-Pacific War. Many historians use the latter to highlight Japanese aggression against other Asians and Pacific Islanders, rather than focus on Japan’s confrontation with a white-dominated US. To me, this also an indication of Professor Ramseyer’s US-Japan epistemology of Asia-Pacific history. This view overlooks US military hegemony in the region since the dropping of two atomic bombs on Japan in 1945 and denies pre-1945 forms of racial, class, sexual, and age domination as they relate to the history of Japanese imperialism. He even goes as far to flaunt these analytics as completely meaningless, while criticizing left-wing academics for using them to analyz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aving sketched Professor Ramseyer’s ideological framework, let me now move to a more specific discussion of the controversial essay. Here, he makes two primary claims: 1) that women who toiled in wartime “comfort stations” were recruited by private entrepreneurs with whom they freely signed contracts; and 2) that most “comfort women” accepted contracts with comfort station managers based on their own personal interests following what the author calls the “basic game theoretical principles of credible commitments.” I would describe this argument as reverse engineered insofar as it applies a problematic understanding of licensed prostitution in pre-1930s Japan, which is then extended to a faulty understanding of the wartime system sexual slavery. In doing so, he blames the victims rather than acknowledge the forceful and deceptive nature of military

recruitment. Failing to engage in a voluminous body of secondary scholarship that, since the 1990s, has documented the tragedies of human trafficking, Professor Ramseyer's argument takes us back decades, stripping back historical research, painful testimonies, the wor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ransnational activism to better approximate historical truth and enhance social justice. His writings come at a historic low in Japan-South Korean relations and ongoing tensions with North Korea, as well as the MeToo movement, Black Lives Matter, and more. And, while Professor Ramseyer refuses to deal with "comfort women" testimonies because they allegedly lack truth, he insists on transparent facts and physical evidence, but provides extremely little of that and distorts the same records he demands that we must use.

Professor Ramseyer admits that has yet to see a contract about Koreans or any other non-Japanese women. This is a troubling oversight for a piece making such broad and definitive claims about the nature of the "comfort woman" system. In his essay, there is no physical evidence of signed contracts on which his argument is based, nor is there any proof about the signing of contracts or adherence to them. When we examine the evidence he does provide, Professor Ramseyer fails to offer a template or signed contract for any Korean or non-Japanese women; instead, he extrapolates their experiences from scant documentation of Japanese women in China in 1937 and 1938. Despite these archival limitations, he argues without proof that such contracts existed among Korean "comfort women," that they were signed, and perhaps even more problematically, tries to explain all motivation for signing them via economic motives. Similarly scant evidence of Koreans witnessing this system means complete failure to support his shaky claim that "comfort women" completed their contracts and received money promised to them. When one source, an Allied interrogation report from early May of 1942, detailed the recruitment of Korean women to Southeast Asia, the document clearly states what the author omits from his article - namely, that contract recruitment was based on "false representations," to quote the source, and that their labor "was not specified but was assumed to be work connected with visiting the wounded in hospitals, rolling bandages,

and generally making the soldiers happy.” So, although a contract may have been signed in this rare case, it was by no means done so with the kind of disclosure that the author imagines through a model of rational choice or game theory. Did these young women know the locations where they would be transported? Did they really have any possibility of returning until their debts were paid? Even if they did, evidence suggests that this money was from extra tips, not from “comfort station” managers. We also do not know if women received their bank/postal savings, which were often used to prevent women from absconding. As suggested earlier in terms of the author’s callous approach to this history, Professor Ramseyer is not really interested in the subjectivity of women, repeatedly asserting without proof that they “understood that prostitution was dangerous and harsh,” “understood that they incurred a reputational hit even if they quit after a short period,” and “understood that recruiters had every incentive to exaggerate.”

As regards his claim that private recruiters did the work of enticing women with military officials only administering VD checks at comfort stations, the evidence he provides, which omits important parts of original sources, contradicts this very claim. Failing to provide page or section numbers from documents was a red flag for me and others who have examined his disingenuous use of sources. In one oft-cited document from 1938, for example, he omits the words of a Japanese official expressing concern about the police directly mobilizing recruiters to send 2,500-3,000 Japanese comfort women to Shanghai, a scheme that this official wrote likely went against international treaties on the trafficking of women that Japan had signed in 1925. We are not talking here about the issue of contracts. Here, the keyword is human trafficking.

Historians are currently checking the author’s use of other sources, and they have found numerous archival problems that I cannot detail today. Suffice to say that they constitute serious mismatches between a factual claim about the contents of documents and what is written in those documents. Given that his webpage states that Professor Ramseyer grew up in Japan and is proficient in Japanese, one wonders why this essay suffers from such a lack of scholarly rigor. Equally troubling, problems of sources also involve cherry-

picking quotes from an unpublished translation of excerpts from a comfort woman's diary about uncontracted, trafficked labor. But rather than using the published diary, he refers to a limited version that was posted in 2016 on an anonymous, neo-nationalist blog, but which he lists in his footnotes as Korea Institute of History. If the stakes were not so high in speaking about such an important topic as the military system of comfort woman, one might conclude that this is a "prosaic" case of academic dishonesty (prosaic is the word that he used to describe how we should retell this history). But it is impossible and dangerous to dismiss his article in this way, and I do think there needs to be accountability on the part of the author, the journal, and his university. There will be more to this story and we will just have to wait until all pertinent facts emerge from those working to resolve this problem. While we await those developments, I am buoyed by the tireless work of my academic and activist colleagues in the US and across the globe who are working together to help ensure lasting justice for "comfort women" and other ongoing gender-related abuses under militarism.

일본/식민지의 공창제

김부자 | 도쿄외국어대학교 교수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씨(이하, R씨)의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논한 논문 <태평양전쟁의 성행위 계약>이 학술지 ‘법경제학국제리뷰’(IRLE) 온라인판에 게재되면서 국제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동 논문에는 식민지공창제를 논한 줄거 “식민지유곽-일본의 군대와 한반도”(김부자·김영, 2018년)도 인용되어 있다.

30년전인 1991년, R씨는 ‘Indentured Prostitution in Imperial Japan: Credible Commitments in the Commercial Sex Industry’를 발표했고, 1993년 동 논문은 ‘예창기(芸娼妓)계약-성산업의 신뢰할 수 있는 코미트먼트(credible commitments)’란 제목으로 일어번역됐다.⁵⁵ 근대일본공창제도 하 예창기‘계약’에 대해 논한 이 논문은 전자의 논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R씨는 ‘위안부’제도=공창제도란 이해를 토대로 예창기‘계약’을 근거부재인 채 조선인 ‘위안부’에도 응용하면서 일본군·국가의 책임을 면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R씨의 공창‘계약’론 자체가 실태에서 동떨어진 픽션에 불과하다. 원래 공창제도와 일본군‘위안부’제도는 깊은 관련이 있어도 동일하지 않고, 일본군‘위안부’와 조선인‘위안부’도 똑같은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설치 주체는 일본국가의 조직인 일본군이며 위안소도 군전용이었다. 일본군‘위안부’제도의 국가책임을 부인하는 역사수정주의가 늘 그랬듯이 R씨는 이것을 혼동 내지 동일시하여 논하고 있고,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인용하는 것 또한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는 대로이다.

본 보고에서는 양논문의 전문적인 검토까지는 할 수 없어, 우선 후자에서 근대일본 예창기 ‘계약’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전자에서는 식민지공창제에 관한 줄거의 인용에 대해 반론하겠다.

⁵⁵ 출처는 “Journal of Law , Economics & Organization” 89-116 (1991), ‘홋카이도대학교법학논집’ 소노 히로오 번역 44(3), 206-160 쪽. 논문을 보내주신 야마구치 도모미씨, 김창록씨에 감사드립니다. 본 보고의 동 논문 검토는 일본번역에 기초한다.

1. 램지어씨의 근대일본의 공창'계약'론

R씨는 일본의 예창기'계약'에 대해 논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공창=창기'계약을 다루려고 한다. 우선 계약 내용에 대해 R씨는 공창들이 가업기간(최장 6년이라고 함)을 '합의'하여 수입을 '파악'하고 성공하면 조기'폐업할 권리'를 유보했다(625쪽), 또한 숙식비용도 무료였다(624쪽)고 주장한다. 이어서 이 '계약은 집행(implement)됐다' '포주도 통상 약속을 지켰다'(624쪽)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포주는 예창기계약을 조작하여 창부를 영원히 일하게 만들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창부도 노예가 되지 않았다.'(밑줄 필자, 608-607쪽), 즉 '공창은 일반적으로 6년간의 예창기계약으로 등록하여 (그녀들에게는)고액의 수입을 얻었다' '많은 창부들은 3년에서 4년으로 빚을 완제하여 일찍 폐업했다. '나머지 여자들도 계약기간의 만료로 폐업했다'(607쪽)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매춘소가 창부들을 착취하지 않았다'(611쪽)고도 한다. 즉 예창기계약은 여성들이 스티그마있는 성산업에 참입할 경우, 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보장(신용의 공여)을 제공한다는(607쪽) 것이 그 핵심적 주장이다.

이러한 R씨의 창기'계약'론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하를 지적하겠다. 하나, R씨의 핵심적인 주장이 창기'계약'의 신용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R씨와 정반대로 폐창(廢娼)을 주장하는 이토 히데요시들이 내세운 '계약서'에 의거해 가동(稼働)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둘러싼 재판소의 판결만을 제시할 뿐, 중요한 '계약서'의 실례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일절로 안한 것이다. 즉, R씨는 예창기'계약서'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서는 이토들의 '계약서'를 '예외'라고 잘라버리고, '계약'의 신용성에 대해 당시 상황만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 설명도 아래와 같이 중대한 과오가 있다.

둘, R씨의 예창기'계약'론은 업자와 여성들이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로 맺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 업자가 계약한 것은 여성들의 친권자였으며, 당시 여성들을 구속하고 있던 가부장제를 도외시한다. 일본에서 창기가 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인데 미성년자는 법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친권자가 진행했다.

무엇보다 당시 일본사회에서 여성들은 정치적 권리에서 배제된 데다가 남녀 간에 다른 이중의 성규범이 부과됐다. 가장(호주)에 절대적인 가족지배권이 주어진 명치민법 아래, 여성(처, 모, 딸)들은 극단적인 무권리상태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회와 가족의 중층적인

젠더 질서의 최하층에는 빈곤층 딸들이 있었다. 가장와 딸, 업자와 가장, 업자와 10대여성(딸) 간의 있던 금전을 둘러싼 압도적인 권력관계를 외면하고 업자와 여성들이 자유롭게 대등한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자체가 픽션이다.

셋, 게다가 R씨는 '다른 현금을 벌 방법이 없어서 여성들은 몸을 팔고, 부모는 딸을 팔았다'(620쪽)는 것을 예창기계약의 전제로 삼고 있다. 이것은 금전으로 매매되는 인신매매를 시인하는 사고방식이며 전혀 승복할 수 없다. 여성들은 예창기소개업자(포주)에게는 집과 부모형제를 위한 전차금으로 인신매매를 강요당했고, 유곽업자에게는 매춘으로 그 전차금 변제할 것을 강요당했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인신매매가 진행된 것 자체가 여성인권 침해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이것을 뚜렷한 전제라고 하는 R씨의 인권감각의 결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넷, R씨는 공창제도 하 포주가 창기에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많은 창부들이 3년에서 4년으로 빛을 완제하고 일찍 폐업했다'고 말하지만 창기가 놓인 실태와 괴리된 공론에 불과하다. 전전의 폐창운동이나 많은 선행연구⁵⁶가 제시하듯이, 근대일본의 공창제도 하 창기들은 '자유 의사'로 성을 판다는 명분이 만들어졌으나, 그 실태를 보면 창기들은 유곽영업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배회하는 것은 금지되어 유곽 내에 구속되어 있었고, 포주는 전차금 계약으로 창기의 인신을 구속하면서 그 변제가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경비를 청구하여 교묘하게 성착취하는 구조를 갖췄다는 것이 밝혀졌다.

창기의 배분은 각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반 이하였고, 가업(稼業)의 필요경비와 부모 송금, 이자와 변제로 사용되어 전차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예를 들자. '예창기작부소개업에 관한 조사'(1926년)⁵⁷에 따르면 오사카 마츠시마유곽(松島遊廓)의 배분은 포주4, 창기6이었다. 도쿄에 비교하면 포주의 몫은 작지만 그 대신에 여러 경비는 창기의 부담이었다. 여기에 창기 긴고는 전차금 2,250엔으로 1923년부터 일을 시작했다. 9개월의 가업으로 유객(遊客)수 472명, 창기수입 1,487.85엔이지만 포주 597.61엔, 창기 897.61엔이었다. 그 중 창

⁵⁶ 다니가와 켄이치 편 '근대민중의 기록 3-창부' 신인물왕내사, 1971년. 오노자와 아카네 '근대일본사회와 공창제도' 요시카와코분칸, 2010년, 히토미 사치코 '근대공창제도의 사회사적 연구' 일본경제평론사, 2015년, 외

⁵⁷ 중앙직업소개국 '예창기작부소개업에 관한 조사' 1926년(전계 다니가와 편). 또한 사이토 도시에의 나가노현 니혼마츠유곽의 후카가와로의 '계산장'(1917년)에 기초한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면, '계산장'에는 창기 22명의 이름, 본적지, 부모명, 계약금(전차금)의 금액, 가업중의 수지가 기재됐다. 계약금보다 빛이 늘어난 것은 22명 중 15명이고 계약금(전차금)을 완제한 자는 하나도 없었다. 계산방법은 그 달의 '○대금'(용돈), 옷값, 의료비, 잡비(부모 송금 포함) 등 여러 경비 합계를 계산한 후 1%의 이자가 가해지고 그 달 번 금액에서 공제된다. 동 유곽에서는 10년간의 한명만 폐업했다. 사이토 도시에 '이이다유곽과 창기의 생활' 사가 아시타·요시다 노부유키 편 '유곽사회 2' 요시카와코분칸, 2014년

기의 지출은 ①세금, ②식비, ③입욕료, ④의장손료, ⑤침구손료, ⑥이발료, ⑦곽비, ⑧이자, ⑨약값, ⑩잡화이며, 합계는 9개월 767.21엔이었으니 이것을 수입에서 빼면 130.41엔(1개월 평균 14.49엔)에 불과하다. R씨의 주장과 달리 식비와 침구도 공제됐다(숙식은 무상이 아니었다). 9개월의 가업으로 1,487.85엔이나 벌었음에도 전차금 감액은 110.62엔에 불과했다. 경비의 부담이 크고 전차금을 변제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오히려 계약기간 내에 본인 사정으로 전환했다며 위약금 213.91엔이 징수되어 당초 전차금보다 105.20엔 증액됐다.

많은 창기들은 부모형제에게 송금도 했었기에 더 빛이 늘어나는 것이 십상이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전차금 변제는커녕 추가로 빛이 늘어난 창기는 전체 80% 이상이었다. 많은 창기들은 전차금 완제는커녕 빛이 늘어난 것이 실태이며 그러한 한 폐업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즉 공창제도 하 창기들은 책무에 결박된 성노예였다.

이상 얼핏 봤듯이 R씨의 예창기‘계약’론은 중요한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가난한 미성년 여성에 전차금으로 인신매매를 강요한 가부장제를 외면하고 창기들이 놓여있는 전차금 변제가 어려운 성착취의 가혹한 실태를 무시하는 픽션이라고 할 수 있다.

2. 램지어씨의 식민지공창제론

R씨는 전자 논문에서 일본군‘위안부’제도를 논하면서 일본의 공창제와 식민지공창제에도 언급한다. 여기에서도 ‘계약’이 키워드가 된다. 시간 관계상, R씨의 식민지공창제론에 대해 출처의 인용부분을 중심으로 보겠다.

조선 개국으로 부산이 개항(1876년)되어 일본인 이민들이 상륙하자, 1881년 부산영사관은 일본인거류지에 가시자시키(貸座敷)영업을 허가했다. 일본식 공창제의 본격적인 조선 상륙이다. 그 후 이들은 일본인거류지에 증가했다. 로일전쟁 시기, 일본군이 상주하게 되면서 조선 각지에 특별요리점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가시자시키영업지(유곽)가 급증했다. 한국병합(1910년) 후인 1916년 조선총독부는 ‘가시자시키창기단속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일본에서 사용된 ‘가시자시키’ ‘창기’가 처음으로 조선에서 공식적인 법령명이 되어 민족 상관없이 관리대상이 됐다.

주시해야 하는 것은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본의 공창제보다 더 열악했다는 점이다.⁵⁸

- (1) 일본인·조선인 상관없이 창기의 최소연령이 17세. 이것은 일본국내보다 한 살 젊었다.
- (2) 외출제한이 엄격하고 인신구속이 보다 강하다. 기혼여성은 창기로 일할 수 없게 됐다.
- (3) 일본 법령(창기단속규칙)에서는 창기의 폐창, 통신, 면접, 문서, 물건의 소지, 구매, 그 외 자유가 보장되었으나 조선에서는 업자의 준수항목에 계약, 폐업, 통신, 면접의 방해금지가 있을 뿐 창기는 일본보다 열악한 조건 하에 놓여졌다. 일본에서 금지된 張店(하리미세, 창기가 가게 앞 창가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행위)도 금지되지 않았다.

R씨는 (1)에만 언급하고 (2)(3)의 특징을 완전히 외면한다. 일본국내보다 외출도 제한되어 인신구속이 강하고 대우도 열악했다.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겨우 법적으로 인정된 폐업의 자유가 조선에서는 없었다는 것이다. 즉, 조선에서는 창기(일본인·조선인)의 폐업은 일본내에 비하면 훨씬 불가능에 가까웠다. 식민지공창제 하 창기에 대한 노예적 구속은 일본보다 굉장히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계약’에 대해 보자. 동 규칙 16조 4항에 따르면, 창기는 친권자의 승낙서, ‘창기가 및 전차금에 관한 계약서사(娼妓稼及び前借金に關する契約書寫)’, 인감증명서, 경력·창기가 된 이유서, 건강진단서의 제출이 요구됐으나 여기서도 R씨는 이런 계약서들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로 식민지기 조선인 빈민층에 속한 경우, 대부분이 글자를 읽고 쓸 줄 몰랐기에 이 서류들이 실제로 제출됐는지 혹은 제출됐더라도 본인 의사였는지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R씨는 출처의 분석을 인용해 조선인 창기의 저렴한 유흥비·전차금, 저연령을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민지공창제에 관철된 조선인 창기에 대한 열악한 대우와 민족차별이다.⁵⁹ 뿐만 아니라 R씨는 매춘(買春)객의 유흥비에 관련해서 일본인 8엔, 조선인 3.9엔(1929년)이라고 지적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매춘객의 80%는 일본인 남성이고 식민지유흥은 어디까지나 식민지 도시의 일본인거주구에 조성된, 일본인 가시자시키업자와 일본인창부를 중

⁵⁸ 송연옥 ‘일본의 식민지배와 국가적 관리매춘’ “조선사연구회논문집” 32 호, 1994 년. 그 외 특징은 (4)헌병경찰제 하 감독단속기관으로 경찰과 함께 헌병(=일본군)이 개입하고 철저한 성병검사가 정해졌다(김부자·김영, 앞 책 21-22 쪽)는 것도 거론할 수 있다.

⁵⁹ 오쿠무라 류조 ‘조선의 공창에 대해’ “곽청”(1926 년)에 의거하여 논했다. 김부자·김영, 앞 책 96 쪽

심으로 한, 주로 일본인 남성을 매춘객으로 받는 성매매 시스템이었다는 점이다.⁶⁰

이상 R씨 논문의 일부만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나, 자의적인 인용은 물론, 중요한 계약서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등 논문으로 파탄한 것은 분명하다. 또 우리에게도 일본군"위안부"와의 이동(異同=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근대 일본의 공창 제도, 조선·대만 등 식민지 공창제 하에서 업체, 창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⁶⁰ 김부자·김영, 위 책 26 쪽

日本 / 植民地の公娼制

金富子 | 東京外国語大学

ハーバード大学ロースクール教授ジョン・マーク・ラムザイヤー氏(以下、R氏)の日本軍「慰安婦」問題を論じた論文「太平洋戦争における性行為契約」が学術誌『インターナショナル・レビュー・オブ・ロー・アンド・エコノミクス』(IRLE)オンライン版に掲載されたことで、国際的に大きな批判を浴びている。同論文には、植民地公娼制を論じた拙著『植民地遊廓—日本の軍隊と朝鮮半島』(金富子・金栄、2018年)も引用されている。

30年前の1991年、R氏は 'Indentured Prostitution in Imperial Japan: Credible Commitments in the Commercial Sex Industry' を発表した。同論文は1993年に「芸娼妓契約—性産業における信じられるコミットメント (credible commitments)」として日本語訳された⁶¹。近代日本の公娼制度下の芸娼妓「契約」について論じたこの論文は、前者の論旨と密接な関係がある。即ち、R氏は「慰安婦」制度 = 公娼制度という理解のもとに、芸娼妓「契約」を根拠不在のまま朝鮮人「慰安婦」にも応用し、日本軍・国家の責任を免除しようとした。

しかし、R氏の公娼「契約」論自体が実態からかけ離れたフィクションにすぎない。そもそも公娼制度と日本軍「慰安婦」制度は深く関係するが同じではないし、日本人「慰安婦」と朝鮮人「慰安婦」も同じではない。何よりも日本軍「慰安婦」制度の設置主体は日本国家の組織である日本軍であり、慰安所も軍専用だった。日本軍「慰安婦」制度における国家責任を否定する歴史修正主義がつねにそうであるように、R氏はこれらを混同ないし同一視して論じており、その根拠も示さず引用も恣意的であることも多くの論者が指摘する通りだ。

本報告では両論文の全面的な検討はできないので、まず後者で近代日本の芸娼妓「契約」を検討し、次に前者では植民地公娼制に関わる拙著の引用について反論する。

1. ラムザイヤー氏の近代日本の公娼「契約」論

R氏は、日本の芸娼妓「契約」について論じているが、ここでは主に公娼 = 娼妓「契約」を扱う。まず、契約内容においてR氏は、公娼たちが稼業期間(最長6年としている)を「合意」し、収入を「把握」し、成功すれば早期「廃業する権利」を留保した(625p)、また部屋代や食

⁶¹ 出典は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89-116 (1991), 『北大法学論集』曾野裕夫訳44(3), 206-160頁。論文を送ってくれた山口智美さん、金昌禄さんに感謝します。なお、本報告での同論文の検討は日本語訳に基づく。

事代も無料だった(624p)と主張した。次に、この「契約は執行(implement)された」、「抱主も通常は自分の約束を守った」(624p)と主張した。

その上で、「ほとんどの抱主は芸娼妓契約を操作して娼婦をいつまでも働かせ続け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のであり、娼婦のほとんども奴隷にはならなかった」(傍点筆者、608-607p)、すなわち「公娼は一般的に6年間の芸娼妓契約で登録し、(彼女らにとっては)高額収入を得た」「娼婦の多くは3年から4年で借金を完済し、早く廃業した」「残りのほとんども、契約期間の満了とともに廃業した」(607p)と結論づけた。さらに「売春宿が娼婦を搾取していなかった」(611p)とも述べている。つまり、芸娼妓契約は、女性たちがスティグマのある性産業に参入する際に、高収入を得る保証(信用の供与)を提供する(607p)ものというのが、その核心的主張である。

こうしたR氏の娼妓「契約」論にはさまざまな問題点があるが、ここでは以下を指摘したい。第一に、R氏の核心的な主張が娼妓「契約」の信用性にあるにもかかわらず、R氏とは真逆の廃娼の立場にたつ伊藤秀吉たちが取り上げた「契約書」に依拠し、稼働契約や金銭消費貸借契約をめぐる裁判所の判決を示すだけで、肝心の「契約書」の実例を示しその内容を具体的に検討する作業を一切していないことである。つまり、R氏は芸娼妓「契約書」を一枚も示さず、伊藤たちの「契約書」を「例外」だと切り捨て、「契約」の信用性について当時の状況を説明しているだけなのだ。しかし、その説明も以下のように重大な過誤がある。

第二に、R氏の芸娼妓「契約」論は、業者と女性が自由で対等な関係で結んだように主張するが、実際に業者が契約したのは女性の親権者であり、そもそも当時の女性を拘束していた家父長制を度外視している。日本で娼妓になれるのは18歳以上だが、未成年者は法の主体になれず、親権者が行った。

何よりも当時の日本社会で女性たちは政治的権利から排除され、男女で異なる二重の性規範が課された。家長(戸主)に絶大な家族支配権が与えられた明治民法のもと、女性(妻・母・娘)たちは極端な無権利状態におかれた。こうした家父長的な社会や家族の重層的なジェンダー・ヒエラルキーの最底辺に置かれたのが、貧困層の娘たちだった。家長と娘、業者と家長、業者と10代女性(娘)の間にあった金銭をめぐる圧倒的な権力関係を無視して、業者と女性が自由で対等な「契約」を結んだという主張自体がフィクションである。

第三に、しかもR氏は、「他に現金を入手する手立てがなく、女性は身売りをし、親は娘を売った」(620p)ことを芸娼妓契約の前提としている。これは、金銭で売買される人身売買を是認する考え方であり、まったく承服できない。女性たちは芸娼妓紹介業者(女衞)に家や親兄弟のために前借金で身売りを強いられ、貸座敷業者に売春でその借金返済を強いら

れたが、こうした実質的な人身売買が行われたこと自体が女性の人権が侵害されていた証左だ。このことを自明の前提とする R 氏の人権感覚の欠如を疑うしかない。

第四に、R 氏は、公娼制度下で抱主が娼妓に寝食を無償で提供し、「娼婦の多くは3年から4年で借金を完済し、早く廃業した」と述べているが、娼妓のおかれた実態と乖離した空論にすぎない。戦前の廃娼運動や多くの先行研究⁶²が示すように、近代日本の公娼制度下で娼妓は「自由意志」で性を売るという建前がつくられたが、その実態をみると、娼妓たちは貸座敷営業区域（＝遊廓）外での居住や徘徊は禁止され、貸座敷内に拘束されたのであり、抱主は前借金契約で娼妓の人身を拘束しながら、その返済が困難になるよう諸経費を課して巧みに性搾取する仕組みをつく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

娼妓の取り分は各地方で異なるが、多くは半分以下であり、稼業上の必要経費や親への仕送り、利子や借金返済に当てられたため、前借金は雪だるま式に増えた。一例をあげよう。『芸娼妓酌婦紹介業に関する調査』（1926年）⁶³によれば、大阪松島遊廓の取り分は楼主4、娼妓6であった。東京に比較すると楼主の取り分は少ないが、その分、諸経費は娼妓の負担にされた。ここに娼妓金吾は前借金2250円で1923年から稼業を始めた。9ヶ月の稼業で遊廓数472人、娼妓揚代金（売り上げ）1487・85円だが、楼主597.61円、娼妓897.61円だった。このうち、娼妓の支出は①賦金（税金）、②食費、③入浴料、④衣装損料、⑤寝具損料、⑥理髪料、⑦廓費、⑧利子、⑨薬価、⑩雑貨であり、この合計は9ヶ月767.21円だったので、これを揚代代から差し引くと、130.41円（1ヶ月平均14.49円）にすぎない。R氏の主張とは異なり、食費や寝具も差し引かれた（寝食は無償ではなかった）。9ヶ月の稼業で1487.85円も稼いだにもかかわらず、前借金減額は110.62円に過ぎない。諸経費の負担が重く、前借金を返済するには遠く及ばなかった。それどころか、契約期間中に自己都合で転換したとして違約金213.91円を徴され、当初の前借金より105.20円増えた。娼妓たちの多くは親兄弟への仕送りもしたので、さらに借金が増えるのが通常だっ

⁶² 谷川健一編『近代民衆の記録3—娼婦』新人物往来社、1971年。小野沢あかね『近代日本社会と公娼制度』吉川弘文館、2010年、人見佐知子『近代公娼制度の社会史的研究』日本経済評論社、2015年、他

⁶³ 中央職業紹介局『芸娼妓酌婦紹介業に関する調査』1926年（前掲谷川編）。また、齋藤俊江による長野県二本松遊廓の深川楼の「計算帳」（1917年）に基づく実証的な研究によれば、「計算帳」には22人の娼妓の名前、本籍地、親の名前、契約金（前借金）の金額、稼業中の収支が記載された。契約金より借金が増えたのは22人中15人で、契約金（前借金）を完済した者は一人もいない。その計算方法は、その月の「○貸し」（小遣い）、衣服代、医療費、雑費（親への送金含む）など諸経費合計が計算され、そこに1%の利子を加えられ、その月の稼ぎ高から差し引かれる。同遊廓では10年間に一人が廃業しただけだった。齋藤俊江「飯田遊廓と娼妓の生活」佐賀朝・吉田信之編『遊廓社会2』吉川弘文館、2014年

た。同調査によると、前借金を返すどころか、追加で借金が増えた娼妓は全体の8割以上だった。娼妓の多くは、借金の完済どころか借金が増えたのが実態であり、そうである限り廃業は極めて難しいのが実態だった。すなわち、公娼制度下の娼妓たちは債務に縛られた性奴隷だった。

以上ざっと見たように、R氏の芸娼妓「契約」論は、肝心の「契約書」を根拠として示しておらず、貧しい未成年女性に前借金で身売りを強いた家父長制を無視し、娼妓たちが置かれた前借金の返済な困難な性搾取の過酷な実態を無視するフィクションだと言えよう。

2.ラムザイヤー氏の植民地公娼制論

R氏は、前者の論文で日本軍「慰安婦」制度を論じながら、日本の公娼制や植民地公娼制にも言及している。ここでも「契約」がキーワードである。時間の関係上、R氏の植民地公娼制論について拙著の引用部分を中心に見ていきたい。

朝鮮開国により釜山が開港（1876年）され日本人移民が上陸するや、釜山領事館は1881年に日本人居留地に貸座敷営業を許可した。日本式公娼制の本格的な朝鮮上陸である。その後、日本人居留地にこれらは増えていった。日露戦争中、日本軍の常駐化にともない、朝鮮各地に特別料理店を名乗った事実上の貸座敷営業地（遊廓）が急増した。韓国併合（1910年）後の1916年に朝鮮総督府は「貸座敷娼妓取締規則」を公布・施行した。日本で使われた「貸座敷」「娼妓」がはじめて朝鮮で公式の法令名となり、民族を問わず管理の対象になった。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その内容は以下のように日本の公娼制以上に劣悪だったことである⁶⁴。

- (1)日本人・朝鮮人を問わず、娼妓の下限年齢が17歳であり、日本国内より一歳若い。
- (2)外出制限が厳しく、人身拘束がさらに強い。既婚女性は娼妓稼ができなくなった。
- (3)日本の法令（娼妓取締規則）では娼妓による廃娼、通信、面接、文書、物件の所持、購買その他の自由が保障されたのに対して、朝鮮では業者の遵守項目に契約、廃業、通信、面接の妨

⁶⁴ 宋連玉「日本の植民地支配と国家的管理売春」『朝鮮史研究会論文集』32号、1994年。それ以外の特徴は、(4) 憲兵警察制度の下で、監督取締機関として警察とともに憲兵（＝日本軍）が介入し、性病検査の徹底が定められた（金富子・金栄前掲書、21-22頁）ことも挙げられる。

害禁止が掲げられたにすぎず、娼妓は日本より劣悪な条件下に置かれた。日本で禁じた張店（ハリミセ、娼妓が店先の格子内に並んで客を待つこと）も禁止されなかった。

R氏は、(1)だけに言及しているが、(2)(3)の特徴を完全に無視している。日本以上に外出も制限され、人身拘束が強く、待遇も劣悪だった。重要なのは、日本でかろうじて法的に認められた娼妓の廃業の自由が、朝鮮ではなかったことである。すなわち、朝鮮では娼妓（日本人・朝鮮人）の廃業は、日本以上に不可能に近かった。植民地公娼制下の娼妓への奴隷的拘束は、日本よりいっそう強かったと言えよう。

また、「契約」に関してみよう。同規則 16 条 4 項では娼妓は親権者の承諾書、「娼妓稼及び前借金に関する契約書写」、印鑑証明書、経歴・娼妓になる理由書、健康診断書の提出を求められたが、ここでも R 氏はこれら契約書の類を一枚も示していない。なお、植民地期の朝鮮人で貧しい階層に属した場合、ほとんどが文字の読み書きができなかったので、これらが実際に提出されたのか、また提出されたとしても自らの意思だったのかは疑わしい。

さらに、R氏は、拙著の分析を引用して朝鮮人娼妓の遊興費・前借金の安さ、年齢の低さを述べるが、ここで重要なのは植民地公娼制に貫徹した朝鮮人娼妓への劣悪な待遇と民族差別なのだ⁶⁵。のみならず、R氏は買春客の遊興費に関して日本人 8 円、朝鮮人 3・9 円（1929 年）と指摘するが、ここでも重要なのは買春客の 8 割は日本人男性であり、植民地遊廓はあくまでも植民地都市の日本人居住区につくられ、日本人貸座敷業者と日本人娼妓を中心とした、主に日本人男性を買春客とする性売買システムであったことである⁶⁶。

以上は R 氏の論文の一部を検討したにすぎないが、恣意的な引用はもちろん、肝心の契約書の類を全く提示していないなど、論文として破綻しているのは明らかである。

⁶⁵ 奥村龍三「朝鮮の公娼に就いて」『廓清』（1926 年）に依拠して論じた。金富子・金栄前掲書、96 頁

⁶⁶ 金富子・金栄前掲書、26 頁